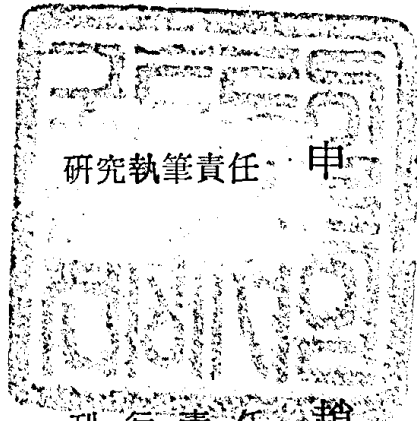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이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越盟의 對美 協商戰略



研究執筆責任 申 榮 錫 (國土統一院 常任研究委員)

刊行責任 趙 建 植 (調查研究室補佐官)

朴 英 鎬 (調查研究室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目 次

I. 序 論	3
1. 研究目的	3
2. 研究範圍	4
II. 베트남戰爭의 歷史的 背景	6
1. 베트남의 歷史	6
2. 베트남戰爭의 起源	7
3. 제네바 協定	10
4. 제네바協定の 違反과 美國의 介入	15
III. 베트남戰爭의 國際法上 性格	19
1. 武力使用의 合法性	19
2. 베트남共和國에 對한 武力攻擧의 不當性	21
3. 베트남共和國에 對한 集團防衛의 合法性	23
4. 베트남, NLF의 國際法上 地位	28
IV. 共產主義者의 協商戰略	33
1. 共產主義者의 協商觀	33
2. 協商의 形態	38
3. 協商의 特徵	41

V. 平和協商戰略	47
1. 平和解決努力	47
2. 越盟의 戰略	49
3. 平和協定の 内容	73
VI. 結 論	75

I. 序 論

1. 研究目的

베트남의 平和協商은 共產主義者들과의 協商으로 인하여 自由越南이 共產화된 實証的인 教訓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즉 共產主義者들은 協商을 紛争解決을 위한것이 아니라 共產化라는 基本目標을 達成하기 위한 手段으로 使用하였으며, 뿐만아니라 그들과의 協商으로 인한 베트남의 悲劇은 일찌기 존슨美大統領이 1968年 9月 18日 第24次 유엔總會에서의 演說에서 言及하였듯이 오늘날 그 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가 南部베트남의 방위를 支援하는 負擔을 졌을 때 백만의 南部베트남 男女 및 兒童들은 우리를 信賴하였다. 지금 그들을 버리게 되면 人命을 소중히 여기는 世界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失望시킬 大量학살의 모험을 하게 될것이다. 또한 南部베트남人民을 포기 하는 것은 南部베트남의 더 많은 生命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그것은 世界平和에 대한 우리의 長期的 希望을 위협할 것이다.

大國은 그의 約束을 어길 수 없다. 大國은 信賴할만 해야 한다. …… 一方的으로 철수하지 않는 다른 또 하나의 理由는 共產世界內的 論争에서 由來한다. …… 설령 美國의 힘이 이미 介入된 후라 할지라도 베트남 民主共和國이 武力에 의하여 南部베트남을 接收하는데 성공하게 되면 이는 協商을 경멸하고 侵略을 主張

하며 美國과의 對決모험을 最少化하려는 指導者들을 매우 強力하게 만들 것이다. 그것은 지금은 平和를 가져오겠지만 후에 더 큰戰爭의 危險을 몹시 增大시키게 될 것이다.¹⁾

이와같이, 美國은 그들을 버리게 되면 베트남에 있어서 大量虐殺의 危險을 當面하게 될 것임을 預見하였음에도 다만 베트남의 眞正한 平和를 保障하기 위한 것 보다 베트남에서의 美國의 名譽로운 退陣만을 위해 平和協商이 이루어진 것이다.

本 研究은 이러한 베트남의 共產化를 招來케 한 파리平和協商을 中心으로 하여 共產主義者들, 특히 越盟의 協商戰略을 分析함으로써 共產主義者들의 基本目標가 赤化統一이며, 社會의 不安과 無秩序는 共產化를 促進케 한다는 事實을 立証코자 하는데 그 目的을 두었다.

2. 研究範圍

本 研究은 베트남의 歷史, 1954年의 제네바協定, 이의 違反과 美國의 介入등 베트남 戰爭에 대한 歷史的 考察과 베트남戰爭에 대한 國際法的 接近方法을 통하여 平和會談에서의 提案, 立場을 理解코자 하였다. 또한 共產主義者들의 協商戰略을 觀察하면서 파리

註1) 「1970年代의 美國外交政策-平和를 위한 新戰略」, 1970年 2月18日 닉슨美國大統領이 議會에 보낸 外交文書중 第2部에 있는 「아시아」와 「베트남」부분, 大戰略 第13卷第1号, 1971, pp.113-114

平和會談에 이르기 까지 , 그리고 會談期間中 越盟이 活用한 協商戰
略이 어떠한 것인가를 分析하는데 重點을 두었다.

이러한 研究를 위하여 , FRED C. IKLE 의 "HOW NATIONS NEGOTIATE", J. BUTTINGER 의 "VIETNAM: A POLITICAL HISTORY", RICHARD A. FALK 의 "THE VIETNAM WAR AND INTERNATIONAL LAW" 등의 資料를 基礎로 하였다.

II. 베트남戰爭의 歷史的 背景

1. 베트남의 歷史

베트남은 아시아의 작은 國家들중의 하나이지만 2千年以上 極東史에 있어서 國土의 크기와 經濟的 資源과는 別途로 뛰어난 役割을 遂行하여 왔다.

베트남歷史의 重要性은 오히려 地理的 位置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베트남은 第2次大戰以來 一般적으로 通用되고 있는 “東南亞”(Southeast Asia)地域內에 있는 中國의 南쪽 國境線에 接해 있다. 東南亞는 印度와 中國사이에서 돌출한 半島와 印度네시아와 필리핀을 包含한 南과 東쪽의 擴大한 群島로 이루어져 있으며 베트남은 바로 이 東南亞의 大陸 擘 印度차이나半島에 位置하고 있다.

印度차이나半島는 다양한 이름으로 使用되어 왔는데, 특히 印度차이나戰爭중에는 仏領印度차이나와 同義語로 불리워졌다.

印度와 中國사이에서 놓여있는 半島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印度人도 中國人도 아니며, 좁은 江의 계곡은 太古의부터 南部中國과 티베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의 移住루트가 되어 왔다.

이러한 地理的 條件으로 印度차이나는 인접 두국가에게 똑같이 영향을 끼쳐왔다. 印度의 貿易과 宗教는, 中國의 哲學과 征服과 마찬가지로, 印度차이나人的 文明發展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印度나 中國이 印度차이나의 宗教, 哲學, 藝術, 政治制度등을 支配하여 왔지

만, 인도차이나의 文化는 결코 단순한 어느쪽의 複写版도 아니다²⁾

2. 베트남戰爭의 起源

베트남紛爭은 인도차이나에 있어서 仏蘭西의 50年以上에 걸친 植民統治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도차이나半島에 대한 仏蘭西의 統治는 1850年代에 시작된 軍事的支配로부터 점차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까지 擴大되었다.

1899年 仏蘭西는 保護領인 라오스와 캄보디아 植民地인 南部베트남의 메콩델타地域에 있는 코친 차이나(Cochin China), 保護領인 中部베트남에 있는 안남(Annam), 北部베트남의 紅河(Red River) 델타지역에 있는 퉁킹(Tonkin)등을 합하여 仏領인도차이나 聯合을 形成하였다.

仏蘭西統治는 1940年代의 日本支配로 대신되었고, 日本支配는 1945年の 항복으로 終熄되었다.

1945年 포츠담會談에서의 美·英·소 3巨頭는 敗亡 日本으로부터 인도차이나領土를 撤收하는 任務를 16度 以南地域에 대하여서는 英國에게, 16度以北地域에 대하여는 中國(Republic of China)에게 각각 부여하였다.

한편 胡志明을 中心으로 하는 베트남(베트남獨立同盟會, 베트남

註2) JOSEPH BUTTINGER, Vietnam : A Political History, New York : Frederick A. Praeger, 1968, pp.3-5

獨立聯盟)은 베트남民主共和國(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의 獨立과 모든 베트남을 代表하는 政府를 하노이에 設立한다고 宣言하였다.

南部베트남에 대한 統治를 接收한 英國은 仏蘭西를 再武装시키고 이 地域에 대한 統治權을 仏蘭西에 넘겨주었다. 그러나 中國은 北쪽에 대한 軍事的統治를 계속하였고, 베트남에게 事實上的 民間政權으로 機能하도록 許容하였다.

1964年3月6日 仏蘭西政府는 베트남政府를 獨立國家가 아닌 “自由國家로서”(as a free state)承認하면서, 베트남政府와 인도차이나의 將來位置에 關하여 “友好的이고 솔직한 協商”을 開議하는데 合意하였다. 3月6日의 協定은 “仏蘭西政府는 베트남共和國이 政府와 議會, 軍隊와 財政을 保有하며, 인도차이나聯邦과 仏蘭西聯合의 部分을 構成하는 自由國家임을 承認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 協定에 따라 仏蘭西當局과 베트남政權間의 協商은 成功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 主要障礙는 불란서 식민지인 코친 차이나를 베트남共和國에 統攝하는 問題와 仏蘭西聯合의 테두리內에서 베트남共和國에게 賦與될 獨立의 程度 등이었다.

1946年12月 主要 公開敵對行爲가 시작되었고, 仏蘭西의 인도차이나戰爭이 발발하였다. 이 戰爭은 仏聯合軍의 디엔 비엔푸에서의 軍事的敗北와 1954年 제네바 會談에서의 政治的 항복으로 종식되어졌다.

만, 인도차이나의 文化는 결코 단순한 어느쪽의 複写版도 아니다²⁾

2. 베트남戰爭의 起源

베트남紛爭은 인도차이나에 있어서 仏蘭西의 50年以上에 걸친 殖民統治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도차이나半島에 대한 仏蘭西의 統治는 1850年代에 시작된 單事的支配로부터 점차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까지 擴大되었다.

1899年 仏蘭西는 保護領인 라오스와 캄보디아 殖民地인 南部베트남의 메콩델타地域에 있는 코친 차이나(Cochin China), 保護領인 中部베트남에 있는 안남(Annam), 北部베트남의 紅河(Red River) 델타지역에 있는 퉁킹(Tonkin)등을 합하여 仏領인도차이나 聯合을 形成하였다.

仏蘭西統治는 1940年代의 日本支配로 대신되었고, 日本支配는 1945年の 항복으로 終熄되었다.

1945年 포츠담會談에서의 美·英·소 3巨頭는 敗亡 日本으로부터 인도차이나領土를 撤収하는 任務를 16度 以南地域에 대하여서는 英國에게, 16度以北地域에 대하여는 中國(Republic of China)에게 각각 부여하였다.

한편 胡志明을 中心으로 하는 베트남(베트남獨立同盟會, 베트남

註 2) JOSEPH BUTTINGER, Vietnam : A Political History,
New York : Frederick A. Praeger, 1968, pp.3-5

獨立聯盟)은 베트남民主共和國(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의 獨立과 모든 베트남을 代表하는 政府를 하노이에 設立한다고 宣稱하였다.

南部베트남에 대한 統治를 接收한 英國은 仏蘭西를 再武裝시키고 이 地域에 대한 統治權을 仏蘭西에 넘겨주었다. 그러나 中國은 北쪽에 대한 軍事的統治를 계속하였고, 베트남에게 事實上的 民間政權으로 機能하도록 許容하였다.

1964年3月6日 仏蘭西政府는 베트남政府를 獨立國家가 아닌 “自由國家로서”(as a free state)承認하면서, 베트남政府와 인도차이나의 將來位置에 관하여 “友好的이고 솔직한 協商”을 開議하는데 合意하였다. 3月6日의 協定은 “仏蘭西政府는 베트남共和國이 政府와 議會, 軍隊와 財政을 保有하며, 인도차이나聯邦과 仏蘭西聯合의 部分을 構成하는 自由國家임을 承認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 協定에 따라 仏蘭西當局과 베트남政權間의 協商은 成功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 主要障礙는 불란서 식민지인 코친 차이나를 베트남共和國에 統合하는 問題와 仏蘭西聯合의 테두리內에서 베트남共和國에게 賦與될 獨立의 程度 등이었다.

1946年12月 主要 公開敵對行爲가 시작되었고, 仏蘭西의 인도차이나戰爭이 발발하였다. 이 戰爭은 仏聯合軍의 디엔 비엔푸에서의 軍事的敗北와 1954年 제네바 會談에서의 政治的 항복으로 종식되어졌다.

베트남과의 繼續된 鬪争과 베트남과의 初期協定에도 不拘하고 仏蘭西政府는 1948年 6月 5日 바오 다이 (Bao Dai)를 수반으로 하는 仏聯合内の 獨立된 “베트남 國家” (State of Vietnam)를 承認하는데 同意하였다.

以前の 통킹과 안남保護領 및 코친 차이나植民地の 全地域을 이 루고 있는 베트남國家는 1949年 3月 8日 仏蘭西(Auriol大統領)와 베트남國家 (Bao Dai)間에 署名된 協定에 따라 仏蘭西에 의 하여 仏聯合内の 獨立國家로서 承認되었다.

이와같이 構成된 베트남國家는 그후 1950年 2月 7日 라오스王國과 캄보디아 뿐만아니라 美國에 의하여 “ 仏蘭西聯合内の 獨立國家 ”로서 承認되었다. 英國도 같은 날 그와 유사한 聲明書를 發表하였다. 소련은 같은해 北部베트남에 있는 베트남을 베트남民主共和國으로 承認하였다.

南쪽의 바오 다이 베트남國家와 北쪽의 베트남民主共和國의 各政權은 全体 베트남에 대한 權能을 各各 主張하였다. 그러나 바오 다이政府는 베트남國家의 完全한 獨立을 追求하였으며, 이러한 目的을 위한 仏蘭西와 베트남간의 對話가 인도차이나에 관한 제네바會談直前인 1954年 3月 파리에서 開始되었다.

1954年 6月 4日 仏蘭西와 베트남國家는 베트남國家와 仏聯合간의 將來關係에 관한 問題解決을 위한 2個의 條約을 假調印하였다. 그 하나는 베트남國家를 “ 完全히 獨立된 主權國家 ”로서 確立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政策決定機能을 “ 主權平等의 基礎위에서 ”

仏聯合内の 最高會議에 移讓하는 것이었다. 이 條約은 後에 署名
되지 않았다.³⁾

따라서 베트남國家는 제네바協定에 의거 모든 主權이 獨立된 베
트남(베트남共和國)에 이양 될 때까지 仏屬西聯合内の 獨立國家로
서 存続하였다.

3. 제네바 協定

仏屬西聯合軍과 베트남問의 武力紛争은 1950年代初까지 繼續되
었다. 양측은 베트남外部로부터 돈과 武器를 얻으려고 하였다.

베트남民主共和國은 中國의 敗北와 本土로부터 蔣介石이 축출된
後 中共으로부터 實質的인 支援을 받았다. 仏聯合軍과 베트남國家
는 同期間中 美國으로부터 10億달러 以上の 軍事的, 經濟的 援助를
받았다. (맨스필드, 보그스, 펠, 스미스 美上院議員의 上院外交關係委
員會에 提出한 報告書에 의하면, 1954年을 통하여 仏領 인도차이
나에 대한 美國의 援助額은 12億달러에 達한다고 함)

1954年2月, 美國, 仏屬西, 英國 및 소련의 外相들이 베를린에서
會合, “韓國問題의 平和的 解決에 到達하며 ” “인도차이나에 있어
서 平和를 회복하는 問題”를 討議하기 위한 두가지 目的으로 제네

註3) DANIEL G. PARTAN, “Legal Aspects of the Vietnam Con-
flict”, The Vietnam War and International Law, edited
lby Richard A. Falk,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pp. 201-203

베트남과의 繼續된 鬪爭과 베트남과의 初期協定에도 不拘하고 仏蘭西政府는 1948年 6月 5日 바오 다이 (Bao Dai)를 수반으로 하는 仏聯合内の 獨立된 “베트남 國家” (State of Vietnam)를 承認하는데 同意하였다.

以前의 통킹과 안남保護領 및 코친 차이나植民地의 全地域을 이 루고 있는 베트남國家는 1949年 3月 8日 仏蘭西 (Auriol大統領)와 베트남國家 (Bao Dai)間에 署名된 協定에 따라 仏蘭西에 의 하여 仏聯合内の 獨立國家로서 承認되었다.

이와같이 構成된 베트남國家는 그후 1950年 2月 7日 라오스王國과 캄보디아 뿐만아니라 美國에 의하여 “ 仏蘭西聯合内の 獨立國家 ”로서 承認되었다. 英國도 같은 날 그와 유사한 聲明書를 發表하였다. 소련은 같은해 北部베트남에 있는 베트남을 베트남民主共和國으로 承認하였다.

南쪽의 바오 다이 베트남國家와 北쪽의 베트남民主共和國의 各政權은 全体 베트남에 대한 權能을 각각 主張하였다. 그러나 바오 다이政府는 베트남國家의 完全한 獨立을 追求하였으며, 이러한 目的을 위한 仏蘭西와 베트남間的 對話가 인도차이나에 관한 제네바會談直前인 1954年 3月 파리에서 開始되었다.

1954年 6月 4日 仏蘭西와 베트남國家는 베트남國家와 仏聯合間的 將來關係에 관한 問題解決을 위한 2個의 條約을 假調印하였다. 그 하나는 베트남國家를 “ 完全히 獨立된 主權國家 ”로서 確立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政策決定機能을 “ 主權平等의 基礎위에서 ”

仏聯合内の 最高會議에 移讓하는 것이었다. 이 條約은 後에 署名
되지 않았다.³⁾

따라서 베트남國家는 제네바協定에 의거 모든 主權이 獨立된 베
트남(베트남共和國)에 이양 될 때까지 仏蘭西聯合内の 獨立國家로
서 存続하였다.

3. 제네바 協定

仏蘭西聯合軍과 베트남간의 武力紛争은 1950年代初까지 繼續되
었다. 양측은 베트남外部로부터 돈과 武器를 얻으려고 하였다.

베트남民主共和國은 中國의 敗北와 本土로부터 蔣介石이 축출된
後 中共으로부터 實質的인 支援을 받았다. 仏聯合軍과 베트남國家
는 同期間中 美國으로부터 10億달러 以上の 軍事的, 經濟的 援助를
받았다. (맨스필드, 보그스, 펠, 스미스 美上院議員의 上院外交關係委
員會에 提出한 報告書에 의하면, 1954年을 통하여 仏領 인도차이
나에 대한 美國의 援助額은 12億달러에 達한다고 함)

1954年2月, 美國, 仏蘭西, 英國 및 소련의 外相들이 베를린에서
會合, “ 韓國問題의 平和的 解決에 到達하며 ” “ 인도차이나에 있어
서 平和를 회복하는 問題 ” 를 討議하기 위한 두가지 目的으로 제네

註3) DANIEL G.PARTAN, “Legal Aspects of the Vietnam Con-
flict”, The Vietnam War and International Law, edited
lby Richard A.Falk,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pp.201-203

바에서 會議를 개최하기로 合意하였다.

1954年5月8日 제네바會談이 개최되었고, 그 다음날 仏蘭西의 軍事要塞인 디엔 비엔 푸가 베트남에 의해 함락되었다. 제네바會談에도 当初 4個國에서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民主共和國, 베트남國家, 中共이 追加로 參席하였다.

이 會談은 「베트남에 있어서 敵對行爲의 停止에 관한 協定」 (Agreement on the Cessation of Hostilities in Vietnam)을 締結하였고, 1954年7月20日 仏蘭西側에서는 인도차이나 仏聯合軍司令官이, 베트남民主共和國側에서는 人民軍司令官이 각기 署名하였으며, 其他國家는 이 協定에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제네바會談은 베트남에 있어서 敵對行爲의 停止에 관한 協定의 主要項目을 保證하는 最終宣言을 採択하였는데, 이宣言은 署名은 되지 않았으나, 英國, 仏蘭西, 소련, 中共, 베트남民主共和國에 의해 口頭로 承認되었다. 다만 美國과 베트남國家는 이를 承認하지 아니하였다.

대신 美國은 이 協定이나 最終宣言에 주의하면서 一方的宣言을 하였다. 즉 美國은 유엔憲章 第2條 (4)項에 의한 義務에 따라 이 協定을 방해하기 위하여 武力을 行使하거나 위협을 하지 않을 것임을 約束하며, 美國은 重大한 利害關係로 이 協定을 違反하는 경우 侵略의 再開로 간주하며 國際平和와 安保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임을 宣言하였다.

베트남國家는 最終宣言의 승인을 거절하였으나 休戰을 妨害하기

위하여 武力을 行使하지 않을 것이며 베트남에 있어서의 眞正한 恒久的 平和를 再確立하기 위한 모든 努力을 傾注할 것임을 宣言하였다.

제네바 協定の 主要規定을 보면,

① 베트남 全國을 통하여 敵對行爲의 完全하고 同時的인 停止와 17 度線에 劃定된 臨時軍事境界線을 중심으로한 相互 武力의 撤收를 선언하고 있으며(協定 1-15 條, 最終宣言 1-2 項), 仏國西聯合軍은 臨時軍事境界線以南에, 베트남人民軍은 以北에 再編成되어야 한다.

(協定 1 條)

② 如何한 軍隊增強 또는 追加的인 軍人, 무기, 탄약, 戰爭物資도 베트남 內의 어느 軍事再編地域內로 반입될 수 없다.

(協定 16 - 17 條, 最終宣言 4 項)

③ 如何한 새로운 軍事基地와 外國統制下의 軍事基地도 베트남內의 어느 軍事再編地域內에 設置될 수 없다. (協定 18 - 19 條, 最終宣言 5 項)

④ 兩側의 軍事再編地域은 如何한 軍事同盟에 加盟되어서는 아니되며, 敵對行爲의 再開나 侵略政策을 促進시키는데 使用되어서도 아니된다. (協定 19 條, 最終宣言 5 項)

⑤ 캐나다, 인도, 폴란드로 構成되는 베트남國際監視委員團은 協定의 規定適用을 管理, 監督하기 위하여 設置되며(協定 34 條), 當事國은 同 委員團에 可能的한 모든 援助와 協調를 提供하여야 한다.

(協定 25 條)고 規定하고 있다.

특히 最終宣言 第6項은 “베트남에 관한 이 協定の 根本的인 目的은 敵對行爲를 終熄시키기 위한 軍事問題의 解決이며, 軍事境界線은 감정적이고 어떠한 意味에서도 政治的, 領土的 境界를 定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自由選舉에 관해서도 同宣言 第7項은 베트남에 관한 限, 獨立, 統一, 領土的 神聖의 原則에 기초하여 이룩된 政治的 問題의 解決은 베트남國民들에게 秘密投票에 의한 自由總選舉의 結果로 設置된 民主制度가 保障하는 基本的 自由를 許容하여야 하며, 平和回復을 위한 充分한 진전이 행해지고, 모든 必要한 條件들이 國民의 意思를 自由로이 表現되게 하도록 保障하기 위하여, 1956年7月에 國際監視委員團의 會員國代表들로 構成된 國際委員會의 監督下에 總選舉가 實施되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⁴⁾

베트남에 관한 제네바 協定은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첫째, 베트남에 있어서 敵對行爲의 停止에 관한 協定으로서 北聯合軍司令官과 北베트남民主共和國 人民軍司令官이 署名한 하나의 條約이며, 둘째, 제네바會談의 最終宣言은 署名되지 않은 하나의 文書이나, 美國과 北베트남國家를 除外한 會談參席代表者全員이 구두로 承認한 것이다.

특히 最終宣言에는 共產主義勢力이 休戰에 同意하는 條件으로 主張한 讓步가 包含되어 있다. 그 가장 重要한 것이 바로 軍事境

註 4) Ibid., pp.204-206

界線을 잠정적인 것으로 하고 政治的, 領土的 境界로 考慮하지 아니한 것이다.

제네바協定에 대한 美國의 拒否가 이協定의 署名국이 아님을 主張한다고 正当化될 수는 없다.

仏蘭西와 베트남을 除外하고 어느 나라도 제네바에서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其他規定들은 모든 参加국이 口頭로 承認하였고, 이것은 但書を 붙여 特定한 事項에 대하여는 그들 自身の 해석을 하기를 希望하는 여러代表들의 宣言을 수반케 하였다. 그들중 美國代表 스미스 (Walter Bedell Smith) 將軍을 들 수 있다.

그는 그의 政府가 會談에 提出된바와 같은 宣言에 參與할 용의는 없으나, 이協定을 방해하기 위한 危脅이나 武力行使를 삼가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그가 共產主義者들에게 보낸 警告는 이協定에 대한 條件附 承認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選舉에 관하여 스미스代表는 6月29日 워싱턴에서 作成된 宣言을 낭독하였다. “그들 意思에 반하여 分斷된 國家의 경우, 우리는 유엔이 監視하는 自由選舉를 통하여 統一을 達成하도록 계속 追求할 것이다.”

또한 베트남國家의 트란 반 도(Tran Van Do) 外相은 7月22日字 디엠首相에게 보낸 電文에서 “우리는 國家分割에 反對하여 필사적으로 鬪爭하였습니다. 그러나 격의 敵對行爲와 거짓 友邦의 배반을 克服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任務에 대한 全的인 失敗에 깊이

비통해 하는 바입니다. 삼가 辭表를 提出합니다.” 고 말하였다.

7月23日 디엠은 사이공放送을 통하여 베트남의 전 북쪽과 中部의 4個省以上을 共產主義者들에게 넘겨준 不法行爲에 항의하면서 国旗를 3日間 半旗로 달도록 指示하였다.

南部베트남과 北部베트남 間의 将来關係에 관한 보다 중요한 것은 會談閉會에 앞서 베트남政府의 이름으로 행한 트란 반 도의 聲明이었다. 즉 그는 “베트남은 領土的 統合, 獨立 및 自由에 대한 베트남 國民의 神聖한 權利를 守護하기 위하여 全的인 行動의 自由를 留保한다.”고 宣稱하였는데⁵⁾ 이는 디엠政府側에서 제네바協定을 承認하지 않는다는 公式宣稱이었다.

4. 제네바協定の 違反과 美國의 介入

제네바協定이 締結된 後 休戰協定에도 不拘하고 強力한 共產계 匪라들이 南部베트남地域에서 계속 活動을 하였다.

軍事境界線 以北으로 撤収한 南部地域의 많은 베트남軍隊들은 하노이가 保有하고 있었고, 北部베트남政權은 같은 民族인 南部베트남人을 南部베트남으로 浸透시키기 시작하였다. 1964年末까지 約4萬名이 1956年以後 하노이에 의해 武器와 補給品을 支援받아온 계렬라와 合流하기 위해 南部로 移動하였다.

南部베트남에서 이들 浸透者들은 戰鬥部隊에 配置되거나 자기 고

註 5) JOSEPH BUTTINGER, 前掲書, pp. 378-380

향에서 새로운 部隊를 形成하는데 使用되었다.

이러한 모든 活動은 하노이로부터의 指示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北으로부터의 繼續된 浸透로 인하여 하노이는 케틸라戰에 使用될 수 있는 南部베트남인의 供給에 고갈되기 시작하였다.

1964年の 浸透부대는 正規軍으로 組織된 北部베트남軍人들로 構成되었다. 이와같이 南部베트남에 있는 많은 兵力과 武器, 補給品들이 北部베트남으로부터 流入되었으며, 計劃, 指示, 命令등 모든 重要한 事項들이 하노이로부터 指命된 것이었다.

한편 南部베트남에 있어서는 1954年6月16日 바오 다이는 그에 反對하여온 民族主義者 고 딘 디엠 (Ngo Dinh Diem)에게 새로운 政府를 構成토록 要請하였으며, 디엠은 1954年7月7日 바오 다이 政權의 首相으로 취임하였다.

1955年 고 딘 디엠은 國民投票에 의하여 베트남共和國 (Republic of Vietnam)의 初代大統領이 되었고, 그의 등장은 美國의 支援에 의한 것이었다.

美國은 새로운 民族主義者인 그가 南部베트남에 있어서의 부패를 없애고 眞正한 民衆의 支持를 받는 國家를 만들도록 積極的인 支援을 하였다.

實際로 잠정적인 軍事境界線 양쪽에서는 協定을 違反하는 심각한 事件들이 발생하였다. 再編地帶内の 領土들이 協定 19條를 위반하여 他地帶에 대한 敵對行爲의 再開를 위하여 使用되고 있었으며, 實質的인 兵力, 武器, 彈藥, 物資들이 協定 第 16, 17, 19條에 위반, 南·

北베트남 양쪽에 流入되었다.

그외에 協定 第14条 (a) 項과 最終宣言 7項에 規定된 베트남의 모든 將來를 解決하기 위한 自由總選舉 역시 實施되지 아니하였다.

더우기 北쪽의 베트남民主共和國과 南쪽의 베트남 共和國은 相互 協定 第19条를 위반, “침략”의 책임을 전가하였다.

國際監視委員團은 1962年 報告書에서 다음과 같이 協定違反事實을 指摘하였다.

“本 委員團의 法律委員會는 …… 武装 및 非武装人員, 武器, 彈藥과 其他 補給品이 南部地帶의 軍隊 및 行政府에 대한 무력공격을 包含한 敵對行爲를 支援, 組織, 遂行할 目的으로 北部地帶로부터 南部地帶로 移送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 ………”

베트남의 人民軍 (People's Army of Vietnam)이 南部의 行政府를 전복할 目的으로 南部地帶內에서 적대행위를 선동, 격려, 지원하는데 北部地帶를 使用할 수 있도록 許容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등이 있다는 結論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行動과 活動은 協定 第10, 19, 24, 27条를 違反하는 것이다. …… 모든 이러한 事實을 考慮하고, 自体 視察 및 美國과 베트남 共和國의 聲明書등에 根拠하여 本 委員會는 베트남共和國이 美國으로 부터 增加된 軍事援助를 받음으로써 協定 第16条와 第17条를 違反하였다고 결론지었으며, 또한 美國政府와 베트남共和國間에 어떤 公式的인 軍事同盟이 있지 않았을런지 모르나 南部베트남에 美軍事援助顧問團 (Military Assistance Advisory Group)을 設置한 것은 協定 第19条에 의거

禁止되어야 한다는 見解이다.⁶⁾.....

이와같은 監視委員團의 報告와는 달리 美國은 “北部베트남이 당초부터 1954年의 協定을 違反하였다. 協定을 위반하고 共產軍과 補給品을 南部베트남에 殘留시켰다. 기타 共產계렬자들은 訓練을 받기 위해 北으로 移動한 다음, 협정을 위반하여 南部로 침투되었다.

共產主義者들의 侵略이 1961年 強化되었기 때문에 美國은 1961年末、相当數의 美軍과 施設을 南部베트남에 增加시킬 必要가 있음을 發見하였다. 北部베트남에 의한 제네바協定の 組織的인 違反은 南部베트남으로 하여금 外國軍人과 軍事施設의 導入을 正當化 하였다.”⁷⁾

以上과 같이 1954年7月21日 제네바協定이 調印됨으로써 第一次 베트남戰爭이 終了되었으나, 베트남民主共和國의 協定違反과 美國의 베트남共和國에 대한 軍事援助의 增加에 따라 第二次 베트남戰爭은 美國과 베트남民主共和國間의 戰爭으로 까지 擴大되기 시작하였다.

註6) DANIEL G. PARTAN, 前掲書, P.208

7) Ibid, P.255

Ⅲ. 베트남戰爭의 國際法上 性格

1. 武力使用의 合法性

베트남戰爭에 있어 武力使用에 대한 合法性 与否에 관하여 많은 論議가 있었다.

즉 베트남共和國에 대한 防衛的인 援助는 가장 널리 認定되고 있는 國際法과 유엔憲章의 原則에 의거 合法的이며, 베트남共和國의 領土的, 政治的 神聖에 대한 베트남民主共和國의 一方的인 彈圧은 不法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武力使用의 合法性을 評價함에 있어서 베트남共和國과 베트남民主共和國이 別個의 國際的 実体이며, 베트남共和國에 대한 베트남民主共和國의 不法的 武力侵略이 있었는가, 베트남共和國과 美国 및 其他國家의 反應이 베트남共和國의 防衛에 合法的으로 必要한 것인가등에 대한 分析을 하여야한다.

베트남共和國과 베트남民主共和國은 적어도 1954年 제네바協定以來 別個의 事實上的 國際的 実体로 存在하여 왔다. 프리드만(Friedmann)教授도 이 実体에 관하여 「南·北베트남은 비록 1954年의 제네바協定으로 2個의 地帶(two zones)로 区分되었지만, 事實上的 別個國家로 容認되어 왔다」고 指摘하고 있다.

事實上 베트남共和國은 國際法上 하나의 國家이며, 또 베트남民主共和國과 베트남共和國이 國際法上 別個의 獨立된 國家라고 하는 實質的인 期待가 있음이 指摘되어 왔다.

유엔總會는 베트남共和國이 유엔에 加入할 資格이 있는 國家라고

하여 왔으나 소련의 拒否權行使로 加入要請에 대한 安保理事會의 決議가 폐기되곤 하였다.

國際法上 하나의 國家로서 베트남共和國의 位置는 60 個國以上이 承認함으로써 確認되었고, 유엔의 12 個專門機構를 包含하여 30 個 國際組織의 會員國인 동시에 유엔의 常時 옵서버이며 여러 國際會議에 參與하여 왔다.

한편 베트남民主共和國에 관하여 보면 國家로서의 主張은 24 個國이 承認함으로써 強化되었다.

1954 年의 제네바協定以後 12 年이 지난 時點에서 볼 때 베트남에는 두개의 存続하는 事實上的 國際實體가 없다는 主張은 그 現實性이 없는 것이 되었다.⁸⁾

1956 年 選舉가 實施되지 않았고, 제네바協定이 계속 妥當한가의 與否는 별문제로 하고라도, 事實上 베트남에는 적어도 事實상의 別個 國際的인 實體가 存在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엔憲章에 반영된 바와 같은 國際法의 主要 테두리가 有效하다면 兩者中 一方이 他方에 대하여 政治的 紛爭解決을 위하여 一方的인 武力使用에 呼訴할 수 없다.

實際로 1956 年 베트남에서 選舉가 實施되지 않았음에도 베트남의 軍事境界線은 계속 有效하였다.

註 8) JOHN NORTON MOORE, "The Lawfulness of Military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Viet-Nam". The Vietnam War and International Law, pp.239-240.

1956年以後 國際監視委員團의 繼續的인 活動과 제네바會議의 共同議長國의 公式 메세지는 選舉가 實施되지 않았다고 베트남에 있어서 國際的인 休戰線의 法的妥當性에 影響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指摘하였다. 더우기 베트남民主共和國과 베트남共和國 兩者는 國際監視委員團에 계속 항의를 함으로써 제네바協定이 계속 法的妥當性을 지니는 것으로 考慮되었다.

政治的不平으로 인한 一方의 行動에 대한 正當性은 世界秩序構造를 파괴하는 것이 된다. 武力의 一方의 使用에 대한 合法性의 唯一한 條件은 一安保理事會가 國際平和와 安保維持에 必要한 措置를 取할 때까지 一 個別的 또는 集團的 防衛이다. 이러한 條件이 없다면, 베트남共和國의 領土的, 政治的 神聖에 대한 베트남民主共和國의 一方的 武力行使는 不法的이며 따라서 武力 공격은 不法行爲로서 베트남共和國에 있어서 適切한 防衛權을 惹起시킬 것이다.⁹⁾

要컨대 베트남共和國에 대한 베트남民主共和國의 武力 공격이 있었다면, 베트남共和國은 當時의 國際法과 유엔憲章에 의거 承認된 個別 또는 集團防衛權에 따라 合法的으로 自國을 防衛할 措置를 取할 수 있다.

2. 베트남共和國에 대한 武力 공격의 不當性

유엔憲章에 의하면, 武力 공격이 있을 때 個別 또는 集團自衛權

註 9) Ibid., pp.242-243.

을 留保한다고 하고 있다. 國際法은 主權에 관한 미미한 侵略, 政治的 紛爭, 國境事件 및 政治的·領土的 神聖과 같은 根本的인 價値를 위협하지 아니하는 侵略등에 대하여 他方이 武力으로 防衛할 수 없다는 것이다.

1965年 2月13日 國際監視委員團의 報告書에서 캐나다代表는 “ 캐나다代表의 檢討見解로는 2月7日以後 南·北베트남에서 일어난 事件들은 北部베트남政府의 侵略政策強化로 인한 直接的인 結果이다. 따라서 北部베트남이 南部베트남當局을 전복할 目的으로 南部베트남에서 敵對行爲를 선동, 고무, 지원하기 위한 그의 努力을 增加하여 왔다는 事實에 可能的한 모든 주의를 경주하여야 한다. 이러한 活動은 제네바協定の 直接的이고 심각한 違反이며, 베트남의 一般的인 不安定의 根本原因을 이루는 것이다. …… 北部베트남에 의한 적대행위의 停止는 1954年의 제네바會談 參加國에 의해 予測된 바와 같이 베트남에 있어서 平和를 回復하는데 不可缺한 것이다.” 라고 說明하였다.

한편 美國務省에 의하면 “ 1959-1961年까지 3年동안 北部베트남은 南部베트남에 約10,700名을 浸透시켰다. …… 하노이의 侵略은 1959年에 實質的으로 이루어졌으며, 1961年까지는 危險스러운 程度로 增大되었다. …… 1964年末까지 北部베트남은 南部베트남에 4萬名以上을 浸透시켰다. 이들 大部分은 라오스中立에 관한 1962年의 제네바協定을 明白히 違反하여 라오스領土를 통하여 浸透되었다. 1964年初에는 土着 北部베트남人이 南部베트남에 相當數 出

現되기 시작하였고, 1964年末에는 北部베트남 正規軍部隊가 南部로 浸透되기 시작하였다. ” 10)

이와같이 베트남共和國에 대한 베트남民主共和國의 軍事手段의 使用은 단순한 政治的 紛爭도, 사소한 國境事故도 아닌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民主共和國의 무력공격은 不法的이라고 하겠다.

특히 베트남民主共和國이 主張하고 있는 不平에 관한 國際監視委員會의 報告를 보더라도 베트남民主共和國은 베트남共和國에 대한 그들의 侵略을 正当化할 合法的인 主張이 없다. 비록 그들의 모든 主張이 法的으로 正当하고 베트남共和國이 제네바協定の 規定에 拘束된다 하더라도 베트남民主共和國의 공격은 彈壓規定에 관한 基本規範에 어긋나는 行動이다.¹¹⁾

그의 活動은 政治的 變化를 위한 手段으로서 一方的인 武力行使이다. 따라서 國際法上 이들의 一方的 무력공격은 베트남共和國의 政治的, 領土的 神聖함을 侵害하는 것으로 不法的이며, 個別的·集團的 自衛權을 誘發시키는 것이다.

3. 베트남共和國에 대한 集團防衛의 合法性

集團防衛權은 當時의 國際法과 유엔憲章에 의해 承認된 것으로서, 불법공격에 대해 一國의 要請에 의거 他國이 援助하는 權利이나 現存하는 平和維持機構의 效果的인 權能에 비추어 볼 때, 이

註 10) Ibid., PP 244-247.

11) Ibid., P. 248.

權利는 強力한 國家에 의한 犧牲으로 부터 弱한 國家를 保護하는 데 必要한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共和國의 集團防衛를 위한 美國의 援助는 合法的인 것이라고 主張되어 왔다. 特히 켈젠(Kelsen)教授는 “유엔憲章 第51條에 대하여 一般的으로 認定되고 있는 해석에 따르면, 集團自衛權은 非會員國에 대한 무력공격의 경우에도 行使될 수 있다.”고 指摘하였다. 12)

一般的으로 當時의 美國學界에 있어서는 美國의 集團防衛援助가 베트남共和國의 要請에 의하여 무력공격에 대한 베트남共和國의 防衛를 위한 것이며, 유엔憲章과 SEATO條約의 精神에 비추어 合法的이라는 것이다.

한편 北部베트남은 民族解放戰線(NLF)이 南部베트남國民의 唯一, 眞正한 代表이며, 사이공政府는 단지 美國의 創造物이며 下手人이라고 主張하여 왔다. 13)

따라서 NLF에 대한 援助는 南部베트남의 合法的인 當局에 대한 援助이며, 이러한 援助는 제네바協定을 위반하는 敵對行爲의 再開로 볼 수 없다는 것이 北部베트남의 立場이다. 더우기 하노이는 美國이 南部베트남에 援助를 함으로써 베트남人民에 대한 “侵略”의 罪를 犯하였다고 한다.

註 12) Ibid., p.250.

13) DANIEL G. PARTAN, 前掲書, p.221, 1965年9月 베트남民主共和國備忘錄 參照.

하노이는 “베트남은 하나이며, 베트남人民도 하나이다. 美帝國主義者들이 베트남祖國의 領土를 占領하고 있으며, 모든 베트남人民들은 民族救援을 위하여 그들과 싸우고자 結束할 義務가 있다. 美國當局은 베트남에 관한 1954年의 제네바協定을 심각하게 違反하였으며, 國際法을 유린하고 베트남人民들에게 非人道的인 犯罪을 저질렀다”고 主張하였다. 14)

美國은 1965年에 發行된 「北으로 부터의 侵略」(Aggression from the North)이라는 白書에서 「南部베트남은 하노이 共產政權이 煽動, 지시, 지원, 統制한 야만적인 테러와 무력공격에 對하여 그의 生存을 위해 鬪爭하고 있다. 이 흉악한 侵略은 수년동안 繼續되어오고 있다. …… 베트남에 있어서의 戰爭은 이미 樹立된 政府에 對한 自發的이고 地域的인 반란이 아니다. …… 베트남에 있는 共產政權은 인근國家의 主權國民을 支配하기 위해 計劃的으로 設置되었다. 이 目的을 達成하고자 共產政權은 은밀한 侵略計劃을 조심스럽게 遂行하는데 그들의 모든 資源을 使用하여 왔다」고 說明하고 있다. 15)

따라서 美國과 사이공은 NLF가 하노이에 의해 조직, 지시, 통제된 것이며, 이는 다른말로 表現하면 베트남民主共和國의 創造物이며 下手人이라는 것이다. 특히 美國은 앞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國

註 14) Ibid., p.221.

15) Ibid., p.222.

際法上 武力侵略의 犠牲者에게는 “그 자신을 防衛하고 集團自衛努力을 組織하도록 許容” 되어 있음을 主張하였다.

이러한 權利는 美國의 見解에 의하면, 유엔憲章 第51條에 承認된 것으로서 南部베트남에 대한 美國의 援助는 集團自衛努力의 일환이며, 第51條에 의거 南部베트남의 防衛를 위해 取한 措置들에 관하여 安全保障理事會에 수시 報告를 하였다. 美國은 베트남의 狀況을 討議하기 위해 安保理事會의 召集을 要請하였으나 理事會는 河等의 措置를 取하지 아니 하였다.¹⁶⁾

要컨대 美國은 베트남戰爭에의 介入이 무력 공격에 대한 集團自衛權에 根拠하고 있음을 主張하였다. 즉 南部베트남에 대한 援助理由로 첫째, 領土的 神聖과 政治的 獨立에 대한 武力使用은, 北部베트남이 시작한 것이고 둘째, 유엔憲章 第2條 4項은 武力使用에 관한 絶對的 禁止를 規定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憲章의 目的과 原則에 一致하는 方法으로 武力을 行使하도록 許容한 것이며, 더욱이 憲章은 特定한 환경에서는 特別히 武力의 使用 즉 유엔을 통한 行動, 地域協定을 통한 行動, 自衛行動 등을 규정하고 있다.

美國과 베트남共和國의 行動은 性格上 방어적이며 武力侵略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憲章의 目的과 原則 特別히 第2條 4項의 規

註16) 1966年1月31日, 유엔安保理事會議長에게 보낸 美國大使의 書翰 參照.

定과 全的으로 一致하는 것이다.¹⁷⁾

이러한 観点에서 美國은 南部베트남에 대한 武力侵略의 自衛手段으로 베트남共和國에 대한 援助와 北爆이 行해졌다.

다음 앞에서 言及한 地域協定 즉 SEATO와 關聯하여 베트남戰爭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네바會談이 폐막된 後 2個月도 못되어 호주, 佛蘭서,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타이랜드, 英國과 美國이 1954年 9月8日 필리핀의 마니라에서 東南아시아 集團防衛條約(Southeast Asia Collective Defense Treaty)에 서명하였다. 베트남共和國은 SEATO條約에 加入하지 아니하였으나(제네바協定 第19條에 의거 加入이 禁止), SEATO條約國은 SEATO條約 第4條의 防衛地域內에 “베트남國家 管轄下의 自由領土”가 包含된다는 讓定書에 合意하였다.

同條約 第4條는 條約國이나 地域內 어느 國家에 대한 條約地域內에 있어서 武力 공격에 의한 侵略은 自身의 平和와 安全을 危脅하는 것이며, 共同危險에 當面하여 行動할 것에 同意하며, 이 條項에 의거 取한 行動은 즉시 유엔安保理事會에 報告되어야 한다는 것을 主要內容으로 하고 있다.

SEATO條約은 武力 공격으로 인한 共同危險에 當面하여 集團行動을 하는 節次를 規定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條約 第5條는 條約施行에 관한 事項을 討議하기 위하여 理事會를 設置하도록 하였으나

註 17) DANIEL G. PARTAN, 前揭書, pp.223-224.

理事會에 대한 特定한 權限을 規定하지 아니하였다.

SEATO 理事會는 매년 베트남戰爭에 관하여 討議하였으며 베트남 共和國에 대한 계속적인 共產主義者들의 侵略에 관하여 심각한 우려와 이러한 組織的인 行動이 1954年과 1962年의 제네바協定을 위반, 北部베트남의 共產政權에 의해 지시, 공급, 지원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에 대한 判斷등을 表明하였다.

美國에 追加해서 SEATO의 數個會員국이 사이공政府에 대한 軍事援助를 提供하였으나 이러한 援助는 SEATO의 테두리外에서 수행된 것이었다.¹⁸⁾ 따라서 베트남戰爭과 關聯하여 SEATO의 活動에 관한 國際法上的 問題는 없었다.

4. 베트남, NLF의 國際法上 地位

가. 베트남 : 2個 또는 1個 國家인가?

제네바協定은 베트남을 두個의 軍事再編地帶 (two military regrouping zones)로 分離하는 것이 잠정적인 것임을 明白히 하였다. 즉 最終宣言 第6項은 “軍事境界線은 잠정적이며 政治的 또는 領土的 境界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고 하였다. 또 第11,12項에 의하면 이 宣言에 加盟한 國家는 明白히 單一國家(a single state)로 考慮되는 베트남國家의 主權, 獨立, 統一과 領土的 神聖을 尊重하는데 서약하였다.

註18) Ibid., pp.230-232.

美国은 앞서 論及한 바와 같이 協定에 서명하지 않았으나 이 協定을 妨害하기 위하여 武力을 行使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였고, 그후 제네바協定이 “東南아시아에 있어서 平和를 위한 適當한 基礎”이며 “베트남의 再統一問題는 베트남國民들 自身の 自由意思決定을 통해 그들이 決定하여야 한다”고 宣言함으로써¹⁹⁾ 제네바協定에 肯定的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1965年 3月 8日 美国務省의 “北部베트남에 대한 美国措置의 法的 根拠”에 관한 備忘錄 (Memorandum on the “Legal Basis for United States Actions Against North Vietnam”)에 의하면 “하노이의 侵略은 國際적으로 承認된 1954年の 南·北베트남境界線과 베트남·라오스間的 國際的인 国境을 넘어 수행되었으며” 베트남을 하나의 國家로 言及하고 있다.

사이공政府는 베트남의 全地域이 두개보다는 하나의 國家로 構成되어 있다는 見解를 拒否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그와같이 하는 것이 分断을 承認하는 것이며, 北部베트남의 別個 國家의 政府로서 하노이當局을 認定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1955年 사이공政府의 声明에 의하면 하노이는 武力으로 北部베트남을 統治하고 있는 事實止의 政權이며, 베트남은 그의 意思에 反하여 分断된 하나의 國家로 殘存하고 있다는 것이다.

註 19) 1966年 1月 7日 美国務省發表 東南아시아平和를 위한 14個 項(Washington's Fourteen Points, January 7, 1966).

그러나 時間의 흐름과 제네바協定の 全的인 拒否는 베트남에 있어서 두개의 別個의 獨立主權國家를 수락하는 結果를 招來할 수도 있는 것이다. 獨逸, 中國 등의 分斷에 대한 法的인 見解의 變化는 그와 類似한 結果를 가져왔다.²⁰⁾

나. 民族解放戰線 (NLF)

民族解放戰線 (National Liberation Front)은 베트남戰爭에 있어서 베트남共和國과 베트남民主共和國間的 論爭의 核心이 되었다. 美國은 “하노이의 北部베트남政權은 베트남을 組織적으로 만든後 그들의 裝備를 提供하고 게릴라戰을 展開하였다. NLF는 南北베트남 國民의 의사를 表示하는 政治團體나, 南部베트남人口를 構成하는 실질적인 要素도 아니다. 論爭을 混亂시키고 先天的인 반란의 神話를 조작하기 위하여 하노이政權이 날조한 허수아비이다. …… 베트남은 南部支配下의 土着 南部人들을 포섭하고 있으며, 이러한 事實에 대하여 美國이나 南部베트남政府는 하등 의심하지 아니한다. NLF의 役割을 論議함에 있어 베트남세력의 構成은 論爭이 되지 아니한다. 이 論爭은 土着的인 要素를 代表하기 위한 政治團體로서 어떠한 權利를 지니는 가의 與否이다. NLF는 하노이가 만들어 낸 人爲的인 단순한 組織”이라고 비난하였다.²¹⁾

이러한 事實은 分明히 베트남의 어느地帶도 적대행위를 재개하거

註 20) DANIEL G. PARTAN, 前掲書, pp.217-218.

21) Ibid., p.218.

나 侵略的인 政策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使用되어서는 아니된다는 協定 第19條를 위반하는 것이다.

베트남民主共和國은 베트남共和國이 제네바協定을 수 없이 위반하였으며 특히 選舉에 관한 規定은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비난하여 왔다. 또한 南部베트남에 대한 美國의 援助가 侵略을 構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하노이는 이러한 根拠위에서 제네바協定을 停止하거나 廢止하려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하노이는 아직 이 協定에 拘束되고 있음이 틀림없다.

만일 美國의 主張이 正確하다면, 제네바協定을 위반하여 하노이가 만든 NLF는 하나의 不法組織이다. 反面에 만일 NLF가 사실상 南部베트남의 반란으로 組織된 土着的인 南部베트남集團이라면 國際法上 어떠한 地位에 있는 것일까?

NLF를 南部베트남의 土着的인 것으로 考察한다면 南部베트남의 紛爭은 확실히 NLF와 사이공政府間의 市民戰爭(civil war)일 것이다. 이것은 베트남이 그들의 의사에 反하여 잠정적으로 区分된 單一國家이건 또는 2個 分斷國家로서 考慮되건간에 事實이다. 만일 베트남이 單一國家이라면 市民戰爭은 南部베트남의 파벌間의 鬪爭인 것이며, 베트남이 두개의 別個國家라면 市民戰爭은 그들중 하나가 支配하기 위한 단순한 戰鬪인 것이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제네바協定은 NLF에 대한 北部베트남의 援助를 禁할 것이다. 제네바協定이 効力을 지니는 限 協定 第24條는 分明히 “雙方의 軍隊는 다른 側의 軍事統制下에

있는 領土를 尊重하여야 하며, 다른 側에 대항하는 行動이나 活動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規定에 의하여 그러한 干涉을 금지하고 있다. 22)

一般的인 見解는 NLF를 南部베트남에서 市民戰爭을 위해 싸우는 土着的인 반란集團으로 본다면 國際法上 交戰國으로 認定될 수도 있으며, 戰爭에 있어서 交戰國은 交戰國으로서 由來되는 權利와 義務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NLF는 하노이의 指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또한 事實이다.

註 22) Ibid., pp.219-220.

Ⅳ. 共產主義者의 協商戰略

1. 共產主義者의 協商觀

一般的으로 協商(Negotiation)이란 「個人, 集團 또는 國家가 서로 相衝하는 利益이나 共通된 利益을 절충·타협하는 相互作用의 形態」라고 定義할 수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協商은 當事者나 當事國 雙方間에 어떤 共通利益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默示的인 理解를 가질 때에 可能하며, 協商을 拒否하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것이 有益하다는 判斷이 서야 雙方間에 相互接觸을 갖게 된다.

따라서 協商은 힘의 使用을 피하고, 紛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게 된다. 즉

- ① 協商은 妥協할 意思를 必要로 한다. (willingness)
- ② 雙方이 讓步를 하여야 한다. (concession)
- ③ 어느側도 자기가 바라는 全部를 얻으리라는 期待를 하지 아니한다.
- ④ 雙方이 正直하게 (in good faith) 協商을 하는 경우 公正한 解決策을 發見할 수 있다.
- ⑤ 많은 이슈에 관하여 紛爭이 있는 경우 論爭의 여지가 적은 이슈를 먼저 해결하여야 한다.
- ⑥ 協商者는 결코 그가 履行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危險을 相對側에 하지 아니한다.
- ⑦ 雙方은 자기 움직일 수 없는 最少限의 것을 가져야 한다

는 것이다.

한편 協商을 狹義로 볼 때 紛爭을 조정하는 默示的인 흥정이나 其他 行態와는 區別되는 過程을 意味한다. 즉 協商은 相衝되는 利害가 存在하는 경우 共同利益의 交錯이나 이의 實現을 위한 合意에 도달할 目的으로 明白한 提案이 表面上 提示되는 過程이다. 따라서 이 提案은 協定の 條件만이 아니라 討議될 議題 (agenda), 適用되어야 할 一般原則, 根本的인 技術的, 法的 이슈를 다룬다.²³⁾

實際 國際協商에 있어서는 相當한 多樣性이 있다. 政府는 항상 잠정적인 接觸에서부터 公式會談에 이르기까지 外交的인 흥정으로 임해오고 있다.

國際的인 協商에 있어서 政府의 目的이나 目標에 따라 5가지 形態로 分類된다. 즉

- ① 延長協定 (Extension Agreement)
- ② 正常化協定 (Normalization Agreement)
- ③ 再分配協定 (Redistribution Agreement)
- ④ 革新協定 (Innovation Agreement)
- ⑤ 合意와 關係없는 附隨效果 (Effects not Concerning Agreement) 등을 目的으로 하는 協商을 들 수 있다.²⁴⁾

먼저 延長協定을 目的으로 하는 協商은 現存協定을 延長하려는

註 23) FRED CHARLES IKLÉ, How Nations Negotiate, New York: Harper & Row, 1964, pp.1-4.

24) Ibid., p.26.

것으로 關稅協定の 延長, 海外軍事基地維持權의 更新, 國際機構의 主要職員交替등이 이에 該當하며, 이 類型的 協商效果는 現狀維持를 確認하거나 現存하는 關係의 輕微한 變化를 가져온다. 이때 合意가 成立되지 않을 때는 現存 協商이 폐기되는 상태가 된다.

正常化協定을 目的으로 하는 協商은 非正常的 關係를 終結짓거나 默示的 合意를 公式化하려는 것이다. 즉 停戰 또는 休戰을 통한 戰鬪中止, 外交關係의 再樹立, 軍事同盟의 條件으로 一時的인 占領의 終結, 平和條約을 통한 戰後 不確實한 關係의 整理등을 들 수 있다. 이 類型的 協商에서는 協商者들이 非正常事態를 解決해야 한다는 壓力을 強力하게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特徵이다. 正常化協定이 合意되지 않을 때는 非正常事態는 계속되지만, 이의 不安定性때문에 보통 새로운 變化가 短期間內에 뒤따라 일어난다.

再分配를 目的으로 하는 協商은 領土, 政治的 影響力, 制度的 權限과 權利, 經濟的·軍事的 資產등을 새로이 分配함으로써 現狀을 變更시키려는 것이다. 이의 特徵은 攻勢側과 守勢側이 明白히 区分되고 攻勢側은 守勢側에 不利한 讓步를 強要하는데 있다. 특히 이 協商에서는 攻勢側은 그의 要求가 拒否되면 한층 더 不利한 結果를 招來시키겠다고 危脅함으로써 그 要求를 관철시키려는 것이 特徵이다. 即 1979年初 中共과 越盟間의 紛爭을 들 수 있다. 中共이 캄보디아를 侵攻한 越盟軍의 撤收를 要求하였으나 越盟이 이에 不応함으로써 惹起된 것이다.

새로운 制度나 機構를 創設하려는 目的에서의 協商은 刷新 또는

創造를 위한 것으로 協商當事國間에 새로운 關係나 任務, 責任의 設定을 둘러싸고 協商이 展開된다. 이때 利益의 均衡있는 分配가 實現된다는 保障은 없어도 協商當事國들 사이에 共通利益에 대한 默示的 合意가 作用할 수 있다. 實例로는 欧州共同市場을 設立하기 위한 로마條約會議, 國際平和委員會의 定款制定會議 등을 들 수 있다.

合意에 關係없이 附隨效果를 얻기 위한 協商은 表面上 討議된 争點의 解決을 誘導하지 않으면서도 多樣한 外交政策目的에 貢獻하게 된다. 例컨대 宣傳을 펼 수도 있고 情報를 蒐集할 수도 있으며, 또는 相對側의 政治態度를 修正할 수도 있다.²⁵⁾

協商은 當事國相互間에 同意할 때 協商過程으로 들어가게 된다. 協商過程은 넓은 意味에서는 當事國의 目標에서 協商結果에 이르는 全段階를 包含하며, 좁은 意味에서 본다면 大略 다음과 같은 側面이 서로 얽혀져서 進行되는 過程을 말한다. 즉

- ① 行爲者(當事國)를 協商에 臨하게 하고 머물게 하는 目標
- ② 意思疎通과 行爲를 包含한 過程自体
- ③ 協商過程에서 발생되며, 當事國이 影響을 미치는 結果
- ④ 協商當事國의 相互關係와 文化傳統의 背景
- ⑤ 協商이 이루어지는 特殊한 狀況的 與件이 協商過程에 作用

註 25) Ibid., pp.26-27. 趙英規, 北韓의 協商技巧에 관한 研究, 統一政策, 第5卷第3号, 平和統一研究所, 1979, pp.125-126 參照.

하게 된다.²⁶⁾

協商過程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当事國을 代表하는 協商者이다. 따라서 協商者의 性格과 協商技術이 協商過程에 큰 影響을 미친다. 또한 協商者가 自國政府로부터 어느程度的 信任을 받는 人物인가에도 重要한 問題가 된다.

協商過程을 복잡하게 만드는 要因으로 当事國의 內政이 協商過程에 민감하게 關聯된다. 例컨대 美國의 경우 輿論, 議會, 協商과 關聯있는 關係部處의 態度등을 들 수 있다.

또한가지 規則의 不在現象에서 찾아 볼 수 있다. 例컨대 勞使紛爭은 雇傭主와 勞動者間에 政府라고 하는 最高機關이 規定한 規則에 따라 調整될 수 있으나 國家間的 協商에는 이러한 最高權威가 存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實際會談에서는 協商當事者들이 優先順位에는 差異가 있으나 以上の 5가지 類型中에서 雙方이 각기 目標을 追求케 된다.

그러나 共產主義者들은 이와같은 一般的 協商類型이나 形態, 態度를 따르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며, 協商보다는 附隨的 效果를 獲得코자 하는데 重點을 두고 있다.

共產主義者들의 協商觀을 보면,

첫째, 共產主義者의 歷史觀이나 世界觀은 世界를 根本的으로 社會主義와 資本主義間的 對立關係로 認識하고 있으며, 그들의 倫理觀도

註 26) 韓培浩, 分斷國의 對話, 東亞日報社, 1979, p.16.

社會主義가 善이라면 資本主義는 惡이라고 하는 二重的 倫理를 土臺로 하고 있다.

둘째, 協商을 단순히 相衝된 利益의 妥協, 절충이 아니라 敵對勢力의 除去, 肅清을 위한 잠정적인 合意로만 看做하며, 파기할 수 있는 一時的인 方便戰術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共產主義者는 協商相對方을 戰爭의 相對側으로 認識하고 있기 때문에 相對側의 힘이 弱化되도록 모든 조작을 하며, 雙方의 힘의 교착상태에 到達할 때 비로서 協商의 條件이 成熟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協商態度때문에 共產主義者와의 協商은 相對方에게 過度한 負擔을 주게 마련이다. 즉 그들의 硬直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定向을 보다 現實적인 次元으로 끌어들이야 하고, 그들의 치밀한 計算에 맞선 充分한 事前準備를 갖추어야 하며, 끈질긴 姿勢에 相應하는 인내력을 지녀야 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術策과 策略에 맞서서 견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點에서 共產主義者들의 協商觀은 一般的인 協商概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 協商의 形態

第2次大戦後 東西兩極의 冷戰体制下에서 美國과 소련은 協商을 거둬들이고 왔으며 韓國休戰以後 제네바會談을 계기로 바르샤바에서도 美國과 中共은 大使級會談을 近20餘年間 繼續하여 왔다. 그러나

한결같이 共產主義者의 外交形態는 「革命的 外交」라는 이름 아래 國際政治秩序의 파괴와 共產主義에 의한 새로운 世界秩序의 創造라는 概念에 바탕을 둔 協商을 展開하여 왔다.

이는 世界의 現狀維持를 打破하는 것이 그들의 一次的 目標이며, 따라서 非正常的인 外交나 協商行爲만이 이들 目標을 達成케 하는 唯一한 方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共產主義者들의 協商態度에서 發見할 수 있는 共通點은 난폭한 言辭, 모욕적인 發言과 行動, 악의에 찬 宣傳등이 外交攻勢의 主武器로 使用되어 왔다. 이와같은 方法은 宣傳的인 效果에만 目的外에 이러한 變態的 行爲를 取하면서 協商相對者로 하여금 당황케 하여 協商姿勢의 均衡을 잃게 하고 自己들의 有利한 方向으로 協商을 이끌어가려는 目的에서인 것이다.

共產主義의 協商態度를 理解하는데 있어서 重要한 點은 그들의 協商概念이 特異한데 있다. 즉 이미 論述한 바와같이 그들은 協商을 共產革命을 達成하기 위한 手段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特定の 自己完結的인 目標을 위한 協商은 無意味하고 오직 窮極的인 全體로서의 目標 즉 共產革命속에서 特定の 目的에 대한 協商이 있을 뿐이다. 共產主義의 이러한 協商形態의 特性은 1910年代의 볼셰비키革命後부터 形成되었다. 이러한 特性의 理論的 要素는 마르크스-레닌主義가 提供해 주었고 마르크스-레닌主義는 볼셰비키革命過程에서는 물론 共產黨의 執權後에도 볼셰비키의 政治的 戰略戰術의 設定을 위해 決定的인 準拠의 틀로 作用하였다. 또한

이같은 現象은 共產主義의 共通된 事實로서 그들은 執權前부터 모든 것을 黨과 그밖의 世界로 區別하는 習性을 지니는 點이다.

모든 것을 兩者間的 關係라는 側面에서 認識하고 있다. 例컨대, 執權以前에 있어서는 外部世界는 敵對的인 世界로서 征服해야 한다는 것이며, 執權後에도 外部世界는 國內外를 막론하고 反革命的 勢力이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認識方法은 共產主義의 共通된 特徵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共產主義者가 參與하는 協商의 性格은 狀況에 따라 다르긴 하다.

協商의 目標, 協商課題의 性格, 協商進行狀況의 特殊性에 따라 協商形態도 差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政治行動, 戰略, 戰術을 實踐하는데 不可缺한 要素로서의 規則(rule)은 이른바 마르크스-레닌主義라는 理念體系속에 提示된 行動의 原理라고 表現하고 있다. 이는 共產主義의 行動綱領이라 볼 수 있으며 美國의 社會學者 레이츠(Nathan Leites)는 作戰略号(Operational Code)라고 指稱하기도 하였다. 27)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行動綱領에 입각하여 어느時代, 어느國家와 어떤 協商이건 간에 臨해오고 있다.

註27) Ibid., p.20.

3. 協商의 特徵

共產主義는 非共產勢力과의 革命鬭爭에 있어서 協商은 鬭爭의 다른 形態로의 계속이라 보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協商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確固不動한 信念을 土臺로 하고 있다.

첫째, 黨과 非共產勢力간의 協定, 合意는 장차 그 勢力을 除去(liquidate)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그들에 의해 黨의 瓦解를 防止하기 위한 方策에 不過하다고 確信하고 있다.

이러한 點에서 볼 때 共產黨이 外部勢力과 체결하는 合意, 協定은 特定の 具體적인 合意以上の 意味를 지닐 수 없다. 聯政에 參加하는 共產黨의 合意가 이러한 確信에 根拠를 두고 있다.

그 實例로는 國共合作에 임했던 中共黨의 協商態度가 이러한 것을 反映한 것이라고 하겠다.

非共產勢力과의 根本적인 合意를 否認하는 만큼 表面的으로 外部集團과 友好的인 合意를 갖는 것과 그 集團에 대해 폭력을 使用하는 것 사이에 아무 矛盾이나 差異가 있을 수 없다. 兩者가 相對方을 除去하기 위한 包括적인 戰略속의 相異한 戰術일 따름이다.

둘째, 敵이나 共產黨 어느 한便이 暴力에 의해 目的을 達成하는 努力이 失敗하였을 때 黨과 敵사이에 合意, 協定을 맺을 수 있는 條件이 갖추어진다고 認識하고 있다. 즉 協定이나 合意는 싸움이나 폭력행사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다른 形態로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越盟(베트남民主共和國)이 이러한 協商觀에 의거하여 美國과 平和協定을 締結하였고 協定締結後 3年以內에 폭력으로 越南의 共產化에 成功했던 것이다.

세째, 共產主義는 반드시 外部集團이 協定을 違反할 것이라는 確信을 지니고 있다. 相對方이 約束대로 合意內容을 履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外部集團과 協商을 통해 合意나 協定에 도달했다고 해서 共產黨의 全滅危險이 減少된 것도 아니며 相對方 역시 같은 認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合意, 協定은 兩者間의 잠정적인 힘의 교착상태를 「成文化」한 것에 不過하다는 것이다. 共產主義者의 이러한 協商은 敵對的協商(Adversary Negotiation)이라는 內容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協商場所는 論爭과 宣傳의 무대로 轉落되고 協商方法도 輻合的 去來(convergent bargaining), 回避的 意思疎通(elusive communication), 暗黙的 策略(tacit maneuvering)으로 가득 차게 된다.²⁸⁾

특히 第2次大戰以後 分斷을 겪은 나라로는 獨逸, 中國, 韓國, 越南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獨逸을 除外한 3個國은 骨肉相爭을 겪었고, 共產勢力과 非共產勢力間에 長期的인 戰爭을 經驗한 國家들이다.

韓國과 越南에서는 美國이 直接 戰爭에 介入했었으며, 韓國戰의 休戰會談이나, 베트남戰의 파리平和會談에서는 當事國으로 共產側과

註28) Ibid., p.35.

協商을 主導하였다.

이들 分斷 3個國이 骨肉相爭의 비극을 겪었다는 事實은 共產主義者의 協商形態를 論할 때 매우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分斷國에서 共產主義者들의 協商態度가 戰鬪的이고 철두철미하게 行動綱領을 준수하였기 때문이다.

美國과 이들 3個國內의 共產勢力과의 協商이었던 休戰會談, 바르샤바大使級會談, 파리平和會談을 통해 나타난 共產主義者들의 協商에 있어서 特徵적인 것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3個의 協商을 一貫해서 共產側은 分斷國內의 敵對勢力의 붕괴 또는 弱화에 큰 比重을 두고 協商에 臨했다는 事實이다. 예컨대, 韓國戰爭에서의 休戰會談에서는 北韓側代表 南日은 外國軍의 撤收를 主張하였는데 이는 休戰이라는 軍事的 問題들 다루는 會談에서 論議될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이를 協議事項에 包含할 것을 고집하였다.

파리會談에서도 軍事問題를 해결한 다음 政治問題를 베트남國民 스스로 다루도록 하자는 美國側의 主張에 대해 베트남은 兩者의 同時解決을 고집하고 그들 「平和案」의 10個項中 첫 項目으로 사이공政權의 붕괴를 획책하는 過渡聯政樹立을 提議하였다.

바르샤바會談에서도 中共側은 「대만해협地域의 緊張緩和와 除去」를 議題로 採択할 것을 고집하였다. 이는 台灣으로 부터 美軍의 全般的인 撤收를 要求하려는 것이었다.

둘째, 協商過程에서 폭력을 包含한 모든 壓力의 動員을 들 수

있다.

韓国休戰會談 당시 共產側은 갑자기 武装한 中共軍 1個中隊를 會談場所近方에 投入하였다. 이는 유엔軍側을 心理적으로 危脅하기 위한 示威였다. 이에 대해 유엔軍司令部는 강경한 자세를 보였고, 마침내 金日成과 彭德懷의 이름으로 된 共產側의 謝過文을 받아들였다.

바르샤바會談의 경우에도 中共側은 金門島에 대한 포격을 시작하여 美國의 緊張을 強化시키는 등 고압적인 壓力行使를 試圖하였다.

파리平和會談에서도 越盟側은 美國의 北爆中止로 協商可能性이 높아가던 68年1月末 旧正攻勢를 取하여 莫大한 犧牲을 치르면서도 이를 協商攻勢로 美國의 立場을 守勢로 몰아넣는 決定的인 契機로 活用하였다.

세째, 共產側은 相對方이 받아들일 수 없는 協商條件을 내세워 協商過程에서 相對方의 立場이 弱化되어 讓步해 올 때까지 기다리는 戰術을 使用한다. 파리平和會談에서도 베트남側의 條件은 美國의 立場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티우政權의 붕괴 → 越南에 容共 聯立政權樹立 → 하노이와의 統一을 노리는 時間表였다.

이에 反해 美國側의 提議는 先休戰 → 티우政權維持 → DMZ 복원 → 越南分斷의 固定 → 反共親西方的인 越南의 永久的 確保를 保障하려는 것이었다.

베트남의 平和10個項은 共產側이 追求하는 革命戰爭의 政治的 目標에 대한 美國의 偽裝投降을 要求하는 것이었으나 美國이 提

示한 8 個項은 하노이의 越南赤化를 防止하고 티우식 反共政權의 계속적인 維持를 保障하는 2 個의 越南 固定化를 노리는 것이었다.

이 두개의 完全히 相反된 要求가 맞선 가운데 美國內에서는 反戰무드가 高潮되었고, 이는 美國協商者에게 繼續 壓力으로 作用하면서 美側의 位置가 弱화되게 되었다.

1968 年 5 月 13 日 파리에서 第 1 次 美·越盟代表間의 正式會談이 開催된 後 1973 年 1 月 27 日 美, 越盟, 越南, 臨時革命政府代表들이 베트남 平和協定과 4 個의 議定書에 調印할 때까지 4 年餘의 長期間 協商結果가 結局 美國의 越南化 計劃은 失敗로 끝나고 베트남 側의 要求에 大幅 讓步하는 結果로 끝나고 말았다.

이와같은 現象은 바르샤바會談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53 年에 始作한 會談은 中斷, 再開를 거듭하면서 進行되었고, 中共側은 始終一貫해서 美國의 台灣포기를 要求하였다. 이 協商에서 論議된 것은

- ① 台灣問題
- ② 抑留된 美國民間人의 석방문제
- ③ 兩國言論人의 交流問題 등이었다.

이중 美國民間人과 美國內의 中國人으로 中共歸國을 希望하는 者의 送還問題에만 進展이 있었을 뿐 다른 두問題는 合意를 보지 못하였다. 美國이 台灣에 대한 武力使用포기를 中共에 要求한데 대하여, 中共은 台灣地域으로부터의 美國撤収로 맞섰으며, 民間人의 석방에 있어서도 中共은 美國內에 服役中인 中國人의 석방과 中共

歸屬을 願하는 中國人 名單提示로 맞섰다.

言論人交流問題도 中共側의 拒否로 좌절되었다.

그러나 1971年 「上海共同聲明」에서 美國은 台灣이 中國의 一部임을 認定함으로써 台灣問題에서 讓步를 한 셈이며, 이를 바탕으로 美·中共接近과 國交正常化의 契機가 되었으나, 台灣에 대한 武力使用포기에 대해서는 中共으로 부터 明示적이고 公信力있는 保障을 받아내는 데는 끝내 失敗하였다.

V. 平和協商戰略

1. 平和解決努力

美國은 베트남戰爭이 拡張됨에 따라 베트남戰爭의 終結을 위한 協商努力도 強化되었다.

1965年4月7日 존슨大統領은 존즈 호프킨즈 (Johns Hopkins) 大學에서의 演說에서 非同盟 17個國의 呼訴에 따라, 베트남問題의 平和的解決을 위해 無條件 協商을 개시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이 提案은 하노이側에 의해 拒否되었으나, 1965年 가을 유엔總會에서 골드버그 (Goldberg) 大使는 『우리는 南部베트남 國民을 위하여 유엔憲章이 確認하고 있는 自決權을 保障하도록 追求한다. 우리는 베트남의 再統一이 外部干涉없이 南과 北의 國民들에 의한 自由選擧를 통하여 決定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確信하는 순간, 모든 北爆의 中止를 命令할 용의가 있다』고 平和協商의 目的을 說明하였다.²⁹⁾

1966年10月, 남부베트남을 防衛하기 위하여 軍隊를 파견한 美國과 同盟 5個國은, 마닐라 宣言에서 北部베트남 指導者에 대한 우리의 基本要求는 그들이 침략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領土도,

註29) LEONARD MEEKER, "Viet-Nam and the International Law of Self-Defense", The Vietnam War and International Law, p.330.

基地도, 戰爭擴大도 원치 않는다. 우리는 모든 外國軍隊가 월남,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撤収하고 國內問題가 民族自決과 自由選舉의 原則을 통하여 평화리에 해결되는 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30)

1967年9月29日 존슨大統領은 산·안토니오에서 北爆停止의 美側 條件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마국의 越盟에 대한 空, 海로부터의 폭격은 빨리, 성의있는 討議가 이루어지면 일체 停止할 用意가 있다. 우리는 물론 토의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越盟이 北爆停止 또는 制限을 利用하지 않으리라고 상정한다』

이 提案에 대하여 하노이로부터는 積極적인 回答이 없었다. 베트남 民主共和國(越盟)은 北爆停止에 相應하는 여하한 相互措置도 계속 拒否하였다. 그러나 戰鬥을 축소하고 平和를 가져오기 위하여 존슨大統領은 1968年3月31日, 非武装地帶를 除外한 越盟의 폭격 정지를 命하였다. 同 地帶에 있어서의 越盟軍의 移動, 補給은 聯合軍의 전선기지에 대한 위협과 分明히 관련이 있었다. 『만일 우리의 自制가 하노이側의 自制를 불러 일으키면 이 極히 制限된 北爆마저 조기에 끝날 것이다』고 大統領은 宣言하였다.

北緯 20 度線 以北의 爆撃停止에 의하여 越盟人口의 約 90%를 가진 越盟領의 80%가 공격에서 除外되었다.

註 30) 1969年2月1日 Clark M.Clifforel 美國防長官이 諺會에 提出한 年次報告書, "70年代의 美國防政策", 안전보장논총 (제 2집),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국편, 1969, p.56.

하노이는 美大統領의 이러한 措置에 4日이 못되어 回答을 하였
다. 4月3日 베트남 民主共和國은 會議開始를 위하여 北爆 및
越盟에 대한 다른 일체의 戰爭行為의 無條件停止를 美側과 協議하
기 위하여 美代表와 接觸할 代表를 任命할 용의가 있다고 宣言하
였다.³¹⁾

美國은 이 提議를 수락하고 會談場所에 관하여 약간의 意見交換
을 한 다음, 1968年5月13日 파리에서 第1次 美-越盟代表間의 正
式會談이 開催하게 되었다.

2. 越盟의 協商戰略

가. 平和提議의 拒否

베트남 民主共和國이 協商테이블에 앉기까지는 美國과 第三者
의 不斷한 平和協商提議가 있어 왔다. 그러나 越盟은 앞서 言及
한 바와 같이 美國의 平和解決을 위한 여러 提議를 拒否하였을
뿐만 아니라 特히 第三者의 平和提議도 一貫되게 拒否하여 왔다.
이러한 拒否戰略은 그들이 協商에 앞서 有利한 提議, 會談의 이니
시아티브를 확보, 有利한 位置를 차지하기 위한 共產主義者들의 協
商戰略의 하나인 것이다. 即

① 1965年4月1日 非同盟 17個國은 前提條件이 불지 않은
交渉에 의한 平和解決의 呼訴를 提議하였다. 4月8日 美國政府는

註31) 前掲書, pp. 56-57.

이 呼訴를 환영하고 그의 諸原則에 同意하였다. 4月 19日 越盟은 이 提案을 拒否하면서 이 提案은 베트남 民主共和國 自身の 前提條件에 根拠하지 않고 있어 不適當하다고 하였다.

② 1965年 4月 우탄트 유엔事務總長이 베트남問題의 平和解決을 討議하기 위해 하노이, 北京 등 各國 首都訪問을 考慮中이라고 하였을 때 美國은 이 着想을 支持하였다. 그러나 1965年 4月 8日 캄 반 동 首相은 유엔의 베트남介入에 대해선 如何한 方法도 不適當하다고 하였다.

③ 1965年 4月 印度政府는 敵對行爲의 相互停止, 아시아·아프리카諸國巡察部隊에 의한 國境의 國際監視 및 베트남國民이 希望하는 限, 베트남의 現國境을 維持한다는 제안을 提示하였다.

美國은 이 提案에 관심을 表示하고 이 제안을 考慮하여 印度政府와 이를 托의하였으나 1965年 5月 6日 하노이放送은 이 提案이 제네바協定の 基本原則에 全적으로 위반되며, 國際監視委員會의 議長國으로서의 印度의 地位에 違背되고 있어 이 趣旨를 越盟이 印度에 通告했다고 發表했다.

④ 1965年 6月 英國首相은 베트남의 戰爭을 終熄시키기 위하여 會談開催可能性을 탐구키 위해 特別使節團을 關係各國의 首都에 파견할 것을 提唱하였다.

美國은 이 提案을 환영하였으나 7月 1日 하노이放送은 베트남 民主共和國은 월슨首相의 平和를 要求하는 誠意에 회의를 느끼는 故로 이 平和使節團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⑤ 1965年12月5日 英国外相은 베트남의 平和招來를 위하여 소련의 助力을 要求하였으며 베트남戰爭과 關係있는 諸국이 停戰을 圖謀하기 위해 會議을 개최할 것을 提唱하였다. 同日 러스크國務長官은 만일 이러한 제안이 事態를 進展시킨다면 美國으로서는 이를 수락할 用意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12月17日 하노이 放送은 英國案이 美國의 戰爭激化를 助長하는 惡質的 意圖에 도움이 될 뿐이라고 聲明하고, 平和의 口實下에 이룩된 일체의 英國提案과 英國의 構想을 拒否하였다.

⑥ 1965年12月19日 로마法王 바오르 IV世는 크리스마스 休日期間中の 베트남休戰을 呼訴하였다. 그 다음날 美國은 平和의 必要를 강조한 法王의 새로운 表示를 환영한다고 聲明했다. 그러나 12月23日 胡志明은 美國의 指導者들은 平和가 아니고 戰爭을 원한다고 非難함으로써 法王의 呼訴를 拒否하였다.

⑦ 1966年7月7日 印度首相은 제네바協定の 테두리內에서 交涉하도록 詳細한 提案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날 美國務省은 우리는 베트남에 명예스러운 平和를 招來하는 諸般 이니시야티브를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印度首相의 會議開催提案을 환영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7月19日 越盟軍事機關紙 「루아토 난자이」는 印度 등을 비난하고 이 제안을 受諾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項目別로 拒否하였다.

⑧ 1966年8月6日 태국, 말레지아, 필리핀 3國外相은 베트남 紛爭의 全當事國 指導者에게 平和呼訴參加를 환기시키는 共同聲明에

서명하였다. 美國은 이 呼訴를 建設的인 제안이라고 이를 즉시 支持하였다.

그러나 8月8日 越盟勞動黨機關紙는 이 제안을 非難하였다.

⑨ 1966年9月18日 로마法王은 平和「아필」을 呼訴, 존슨 美大統領은 이 「아필」支持聲明을 發表하였으나 하노이放送은 美帝國主義의 平和의 노래에 함세 해은 宗教界는 최근 平和로의 感傷的인 아필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⑩ 1966年10月6日 英國外相은 細目에 掲친 6個項目을 제안 하고 그로미코 소련外相에게 제 4次 會談再開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美國은 이 제안을 환영하였으나 1966年10月8日 하노이는 이 제안을 當時의 美國 等の 再版이라고 강력히 拒否하였다.

⑪ 1966年12月8日 로마法王은 크리스마스停戰이 休戰으로 發展해서 休戰期間中 진지한 妥協이 이룩되기를 바란다는 希望을 表明하고, 우탄트 유엔事務總長은 同日 이를 支持하였다. 12月19日 유엔大使 골드버그는 우탄트 사무총장에게 바오르Ⅳ世의 아필에 대해 서한을 보내어 필요한 妥協의 實現을 위해서 事務總長이 必要하다고 생각하는 措置를 取하도록 요청하였다. 美國은 유엔事務總長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討議를 早速히 발족시켜 성공리에 끝맺기 위해 事務總長에게 全面的으로 協力한다고 約束했다. 그러나 1967年1月5日 越盟은 유엔의 어떠한 調停도 拒否한다고 하였다.

⑫ 1966年12月30日 브라운 英國外相은 美國, 베트남共和國, 베

트남 民主共和國에게 敵對行為의 停止를 圖謀키 위한 3國會議를 제창한 메시지를 보냈다.

1967年1月1日 존슨美大統領은 이를 환영한다고 聲明했다. 그러나 1967年1月13日 越盟은 이 제안을 美帝國主義者들의 虛偽에 가득찬 騒音이라고 하였다.

⑬ 1967年3月28日 우탄트 유엔事務總長은 3月14日 全般的인 停止와 予備會談 및 제네바會談의 再開를 제창한 우탄트氏의 提案을 公表했다. 同日 美國은 이 제안을 수락하는 回答을 公表했다. 그러나 1967年4月5日 越盟은 이 案을 非難하였다.

⑭ 1967年4月10日 세이론首相은 停戰의 前提條件을 토의하기 위해 베트남共和國, 民族解放戰線, 베트남民主共和國의 회담을 요청하였다. 4月12日 베트남共和國은 相對側代表와 會見키 위해 세이론에 代表를 파견할 의사가 있음을 表明하였으나 越盟은 이 案을 拒否하였다.

⑮ 1967年4月11日 캐나다外相은 베트남停戰에 관한 4段階의 構想을 提示하였다. 4月19日 베트남共和國은 캐나다 案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를 表現하는 몇 種의 具體的 措施를 提唱하였다. 그 다음날 美國政府도 이 案이 紛爭을 下스칼레이손하는 데 큰 希望이 있다고 하였다.

美國은 모든 軍線가 17度線으로 부터 南으로 10마일, 北으로 10마일 撤収함으로써 非武裝地帶를 擴大할 것을 対応提案하였으나, 越盟은 4月16日과 4月21日 마진 外相案을 美帝國主義者의 巧

妙한 策略이라고 決定지었다. 32)

나. 確固不動한 主張

會談에 있어서 一貫된 確固不動한 (firmness) 主張은 自己의 提案이 確固하며, 따라서 如何한 양보도 장차 있을 수 없다는 것을 相對側에 表示하기 위한 것으로 바로 自己의 位置가 法的 또는 科學的 原則에 合致된다는 것을 主張하는 것이다. 33)

이러한 協商戰略을 越盟은 對美協商過程에서 效果的으로 活用하였다.

베트남은 第2次大戰直後の 解放運動, 인도차이나의 反植民地運動은 數字上으로는 共產主義者의 支配를 받지 않았었다.

越盟의 勞動黨은 胡志明이 1930년에 홍콩에서 結成한 인도차이나 共產黨으로 出發했다. 이 黨은 당시 仏領인도차이나로 불리던 地域을 操縱하였으며, 그 支配下에 넣으려는 意圖를 明白히 내 걸었다.

이 組織은 五尖星을 그 象徴으로 삼고 있는 데 5星의 各尖端은 통킹, 안남, 코친 차이나, 캄보디아, 라오스를 나타내고 있었다. 勞動黨은 이 5尖星의 一部만을 削除한 채 繡繒 使用해 오고 있다. 그들의 戰術은 조금도 變하지 않았다.

註 32) 파리 平和會談에서의 美國代表 「헤리만」 發言參照, 世界週報 1968年 6月 18日号, pp.36-44

33) FRED C. IKLÉ, 前掲書, p.201.

따라서 인도차이나의 戰爭에 관한 限, 越盟側으로서는 항상 하나의 인도차이나의 戰爭이었다는 사실을 理解하여야 한다. 그것이 항상 그들의 의도였으며, 그들은 이 戰爭을 各 局面에서 各 個로 추진하는 方式을 取하고 있으나 窮極적으로 그들의 目標은 古代 인도차이나의 4 個國을 全部 共產化하려는 데 있었다.

美國은 파리會談에서 美軍과 自由陣營의 各 國軍, 越盟軍의 相互 撤收라는 軍事的見地에서 名分이 선 提案을 하였고, 政治面에서는 베트남將來의 決定은 베트남國民 自身の 決意에 맡겨야 한다는 提案을 하였다.

이에 대해 越盟側은 두가지 提案을 계속 一貫되게 주장하였다. 즉 그 하나는 美軍 및 그들의 이른바 「美國의 傭兵들」-韓國, 태국, 호주, 뉴질랜드의 各 軍이 無條件 一方的 撤收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越南의 現政權을 물러나게 한 다음, 그 대신 이른바 「平和內閣」을, 그들의 任意대로 되며 窮極적으로는 그들의 支配를 실현시킬 수 있는 政權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³⁴⁾

따라서 이들은 美國으로 하여금 베트남에서 軍隊와 裝備를 철수시킨 후 힘의 空白을 利用, 베트남을 共產化시키려는 것이 勞動黨

註34) 「닉슨 독트린」속의 越南政策, 1970年7月初, 닉슨大統領을 비롯하여 키신저 補佐官 등 美國政府의 最高首腦部가 行한 說明會의 內容中 발췌, 安全保障 1971年3月号, 時事通信社, pp. 40-41.

의 目標이며, 파리會談에서의 一貫된 主張이었다.

닉슨大統領은 1969年9月18日 第24次 유엔總會에서의 연설을 통해 1969年5月14日의 제안은 戰爭을 조속히, 그리고 公正한 基礎위에 증식시킬 기회를 모두 当事者에게 제공하며 같은 精神에서 베트남共和國의 티우大統領은 7月11日 包括적인 내용의 方案을 제시하였다. 그 방안은 民族解放戰線과 그 支持者들을 包含시켜 南部베트남의 모든 人民과 政黨이 參與할 수 있는 自由選舉와 모든 当事者가 대표를 과견할 수 있는 混成選舉委員會가 包含되고 있다. 6月初 미드웨이 (Midway) 에서 티우大統領과 自由選舉가 어떠한 變化를 가져오던 구애되지 않고 그 自由選舉의 어떠한 結果도 받아들이기로 디같이 公約하였다. 平和의 關鍵은 하노이의 決定에 있다. 美國은 세가지 主要措置를 取하였다. 越盟의 폭격을 중지하였고, 월 남으로부터의 美軍撤収를 개시하였으며, 協商當事者의 하나로 民族解放戰線과 交渉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發表한 바 있다.

또한 1969年1月7日에는 파리平和會談의 람 베트남共和國代表團長이 越南政府는 베트남을 하나의 現實로 認定한다고 宣言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베트남戰爭의 擴大, 長期化와 美國에 있어서의 反戰市民운동이 加熱化됨에 따라 會談에 임하는 美國의 態度와 主張에 一貫性이 결여되었고 1971年 키신저의 새提案은 越盟의 要求를 充足시켜 주는 것이 되었다.

다. 強奪的 要求戰術

強奪的 要求 (Extortionary demand) 戰術은 비록 自己側에게는 何等의 利用價值가 없더라도 會談相對側에게는 그들의 利益과 全的으로 相反되는 排他的 提案을 함으로써 보다 有利的한 妥協高地를 占領한다. 이때의 目的은 그들의 提案속에 介在된 要求條件을 획득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全的으로 相對側에게 同 提案을 撤退하는 대가로 讓步를 얻어 내려는 데 있는 것이다. 이 要求가 수락되지 않을 경우 會談中斷宣言과 同時에 要求條件을 增加시켜 追後의 交渉을 통해 有用한 條件을 얻어내려는 補助提議를 하는 方式이다.³⁵⁾

越盟의 擘 반 동 首相은 1965年 4月 8日 베트남問題의 政治的 解決을 위하여 4個項 (Hanoi's Four Points) 을 發表하면서 이 4個項의 實踐이 越南協商의 條件이라고 하였다. 즉 이 條件을 승인하는 경우, 베트남문제의 平和的 解決을 위해 好意的인 條件들이 淸안될 것이고, 1954年의 제네바會談形態의 國際會議再召集도 考慮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베트남 民主共和國은 이상의 立場과 反對되는 交渉과 베트남事態에 대한 유엔의 介入을 保障하려는 交渉은 不適切한 것임을 宣言하였다.

이는 美國에 대하여 受諾할 수 없는 條件을 提示함으로써 強奪的 要求戰術을 使用한 것이다.

註 35) 趙英規, 前揭書, p.137.

이 4 個項은 ① 美國은 제네바協定에 따라 南部베트남으로부터 軍隊, 軍人, 모든 종류의 무기를 撤収하고, 모든 美軍事基地를 撤去하고, 南部베트남과의 軍事同盟을 取消하여야 한다. 南部베트남에의 介入과 侵略政策을 終結시키고, 제네바協定에 따라 美國은 北部베트남에 대한 戰爭行爲를 中止하고 베트남民主共和國의 領土와 主權에 대한 모든 侵略을 中止해야 한다.

② 베트남은 暫定的으로 두 個의 地帶로 分割되어 있는 바, 베트남의 平和的 統一時까지 1954 年の 제네바協定の 軍事에 關한 規定은 嚴格히 尊重되어야 하며, 두 個의 地帶는 外國과의 어떠한 軍事同盟에 加担해서는 아니되며, 각기의 領土에 外國軍隊, 基地 또는 軍人을 主權해서는 아니된다.

③ 南部베트남의 國內問題는 外國의 干涉없이 民族解放戰線의 綱領에 따라 南部베트남人民 스스로 解決되어야 한다.

④ 베트남의 平和的 統一은 外國의 干涉없이 두 個의 地帶에 있는 베트남 人民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 가장 수락될 수 없는 條件이 第3의 條項으로서 이는 1960 年 民族解放戰線이 組織되었을 때 發表된 10 個 項目의 綱領을 의미한다. 이들 10 個 項目은 ① 越南에서 美帝國主義의 偽裝植民政權인 고딘디엠政府를 타도한다. ② 自主的이고 民主的인 새政府를 形成한다. ③ 獨立된 主權國家에 合당한 經濟體制를 수립하여 國民들의 生活條件을 向上한다. ④ 地代를 내리고 오직 革命을 실시한다. ⑤ 民族的이고 民主的인 文化와 教育制度를 發

전시킨다. ⑥ 祖国과 人民을 防衛할 軍隊를 創設한다. ⑦ 少数民族間의 平等을 保障하며 越南에 있는 外國人の 合法的 利益과 海外에 있는 越南人の 權益을 保護한다. ⑧ 平和的이며, 中立的인 外交政策을 추진한다. ⑨ 越南과 越盟間의 關係를 正常化시키며 平和的 統一을 위해 努力한다. ⑩ 모든 侵略戰爭에 對해서 鬭爭하며 世界平和를 積極적으로 방어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4個條項과 10個 項目이 協商의 條件들이라면 協商은 처음부터 不可能한 것이었다.

越盟과 베트남의 協商條件에 대해 美國은 1966年1月7日 14個 項目으로 묶어서 越南協商에 임하는 것이 美國의 基本立場이라고 밝혔다.

① 1954年과 1962年의 제네바協定은 東南아시아의 平和를 위해 適切한 基礎가 된다.

② 美國은 東南아시아에 관한 會議나 東南아시아의 一部國家들에 관한 會議도 환영한다.

③ 美國은 17個國이 밝힌 바 있는 “前提條件없는 協商”(negotiation without preconditions)을 환영한다.

④ 美國은 존슨大統領이 밝힌 바 있는 無條件對話를 환영한다.

⑤ 敵對行爲의 中止는 會談의 첫 議題가 될 수 있으며 또는 予備會談의 議題도 될 수 있다.

⑥ 하노이의 4個項目은 다른 提案들과 함께 討議될 수 있다.

⑦ 美國은 東南아시아에서 美軍基地를 願하지 아니한다.

⑧ 美國은 平和가 保障된 後에 南部베트남에 美軍을 殘留시킬 의사가 없다.

⑨ 美國은 南部베트남人들 스스로 選扞한 政府를 樹立하기 위하여 南部베트남에서 自由選舉를 實施하는 것을 支持한다.

⑩ 베트남의 統一問題는 베트남人들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決定되어야 한다.

⑪ 東南아시아 國家들은 非同盟이나 中立을 選扞할 수 있다.

⑫ 美國은 戰爭보다도 東南아시아의 經濟再建을 위하여 美國의 資源을 使用하기를 원한다. 만일 平和가 樹立된다면 北部베트남은 이 地域의 經濟再建努力에 參與할 수 있으며, 美國은 10 億달러 이상을 奇與할 용의가 있다.

⑬ 베트남은 하노이가 侵略을 中止하기로 決定하는 즉시 協商에 스스로의 意見을 參與시킬 수 있다. 이는 克服할 수 없는 問題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⑭ 美國은 平和의 첫 段階로 北部베트남에 대한 폭격을 中止할 용의가 있음을 公的, 私的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越盟은 폭격이 中止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밝힌 바 없다.

따라서 越盟의 協商條件은 美軍이 越南에서 撤収하고 越盟에 대한 폭격을 中止해야 하며 越南에서 베트남政府가 樹立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美國의 立場은 越南에서 敵對行爲가 中止되고 越盟의 越南浸透가 中止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戰鬥中止와 그 밖의 모든 軍事的, 政治的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우선 對話의

窓口부터 열어야 한다는게 美國의 立場인데 비해 越盟은 無條件 協商을 排除하고 美軍의 撤収와 越盟에 대한 폭격을 먼저 中止하 라고 要求하였다.³⁶⁾ 만일 美國이 이러한 要求를 수락하게 되면 美國은 根本争点を 양보하게 되는 것이며, 協商할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한편 베트남共和國의 立場은 다음과 같은 合理的인 6個條項을 提議하는 平和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明白히 밝혔다. 즉

- ① 共產主義者들은 그들의 侵略을 中止하여야 한다.
- ② 그들은 越南으로부터 正規軍, 補助軍 (auxiliary forces) 및 그들 基幹要員을 撤収하여야 한다.
- ③ 그들은 인접 국가들의 領土를 侵犯해서는 안된다.
- ④ 越南은 國家融和政策의 効力を 發揮할 것이며, 相對方 追從者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보복을 行使하지 않을 것이다.
- ⑤ 베트남의 統一은 베트남國民의 自由意思에 의하여 決定될 것이다.
- ⑥ 새로운 共產主義者들의 侵略을 防止하기에 充分한 効率的인 國際保證人들의 設定 및 國際統制機構를 設立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969年7月11日 베트남共和國政府는 自由選舉 및 그 原則組織을 위한 基礎로 새로운 6個條項을 提出하였다. 그 主要内容은

註 36) 鄭鍾旭, 分断國의 對話, pp.208-211.

Hanoi's Four Points, Washington's Fourteen Points
參照

① 現在 越南에 대하여 武装하고 있는 民族解放戰線을 包含하여 모든 政党 및 団体들은 만일 그들이 폭력을 포기하고 選舉結果를 수락할 約束을 한다면 總選舉에 參加할 수 있다.

② 總選舉의 公正性を 保證하기 위하여 選舉委員會가 設立될 것이며 이 委員會에서 NLF를 包含하는 모든 政党 및 団体들은 접수될 것이다.

③ 越南政府는 總選舉의 結果에 따를 것이라는 것이다. 越南의 이러한 論理的이며 合理的인 提案은 越盟共產当局에 의하여 어떠한 종류의 진지한 考慮도 하지 않고 拒絕되었던 것이다. 平和를 準備하는 대신 越盟은 戰爭에 광분했으며, 共產主義者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言語인 武力에 의하여 越南을 併合시킬 目的으로 어떠한 不變의 政策을 카바하게끔 되어있는 장막으로 파리會談을 利用할 따름이라고 越南은 主張하였다.³⁷⁾

1968年5月13日 부터 美·越盟代表가 參席한 파리會談은 本會談을 위한 予備會談이었으며 予備會談의 議題는 자연 本會談의 構成問題가 包含되어 있었다.

베트남共和國은 처음부터 NLF의 參加를 反對해 왔고 베트남民主共和國과 NLF 역시 越南의 參席을 反對하였다. 따라서 이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여러가지 案들이 討議되었으나 結局 我側

註 37) The Peace Negotiations and the Communist Aggress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Vietnam, 1969, pp.9-21. 參照

(our side) - 他側 (your side) 이라는 國際會議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稱호를 만들어 냈다. 즉 美國도 아니고 越南도 아닌 我側이라는 칭호와 越盟과 NLF를 他側이라는 칭호로 부르기로 했다.³⁸⁾

그후 1968年 11月 1日, 越盟은 11月 6日 以後는 美國, 南部베트남, 越盟, NLF 代表가 파리會談에 參席한다고 發表하고, 11月 29日 사이공政府 外相은 擴大파리會談 參加를 發表하였다.

1969年 1月 25日 第1次 擴大파리會談에서 美國은 美·越盟 相互撤收, 非武装地帶復元, 南部베트남國民의 自決權, 포로交換을 提案하였고, NLF는 68年 11月 3日 發表한 5個項目 (① 獨立, 民主, 平和, 번영의 南部베트남 수립 ② 美軍의 完全철수, 基地撤去 ③ 民族民主 聯合政府樹立과 自由選舉의 실시 ④ 南北의 平和的 再統一 ⑤ 非同盟, 平和中立政策團 等) 을 提示, 南部베트남을 위한 平和內閣수립 을 要求하였다.

以上과 같이 共產側은 美國에 대하여 수락할 수 없는 제안을 하여 옴으로써 美國으로부터 양보를 획득코자 하였으며, 會談을 膠着狀態에 빠뜨리는 등의 戰術을 活用하였다.

라. 欺瞞戰術

外交官들은 相對側과 接觸을 維持하거나 宣傳을 展開하기 위하여 會談을 한다. 그들의 論争은 相對側의 提案을 改善하거나

註38) 鄭鍾旭, 前揭書, p.224.

그들의 提議를 수락토록 하기 위한 데 目的이 있다. 또는 特定한 目的으로 혹은 目的없이 행해지는 對話를 전혀 무시하기 위해 論爭이 행해진다.³⁹⁾ 뿐만 아니라 事實을 歪曲, 誇張, 欺瞞함으로써 會談決裂의 責任을 전가시키고, 世論을 自己側에 有利하게 誘導코자 하는 데 있다.

越盟의 이러한 戰術은 파리會談에서의 各側代表發言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

美側代表는 旧正攻勢以後 베트남이 거둔 成功에 대한 越盟側의 歪曲과 誇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① 1968年1月30日 부터 5月11日 까지의 期間中 「軍과 南部베트남 人民은 25萬名의 敵부대를 一掃했다.」고 하였는데 이 期間 戰死한 同盟軍兵士는 12,491名이었고, 總計 25萬名中 84,500名은 美軍, 自由世界諸國軍兵士 이었다는데 事實은 이들의 戰死者는 6,160名이고 나머지 6,331名은 南베트남軍將兵으로서, 越盟은 同盟軍側의 死亡者를 거의 20倍나 誇張하고 있다.

② 第3機甲聯隊와 第1空輸部隊가 소탕내지는 중대한 損害를 입었다고 主張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一個部隊도 소탕치 못하고 있으며, 死傷者가 많아 退却을 면치 못하지 아니하였다.

③ 美國이 平和를 妨害하고 있다고 非難하고 全世界가 某種의 行動을 要求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歪曲된 것이다.

註 39) FRED C. IKLÉ, 前掲書, p.197.

越盟側 代表는

① 美国이 南部베트남人民의 自決權에 대해 言及하고 있는데; 이것은 美国이 南部베트남人民의 自決權을 짓밟고 있다. NLF의 깃발아래 結集한 南部베트남人民은 自決權을 탈취키 위해 美国과 그의 從僕에게 反對해 왔다.

美国이 真心으로 이들에게 그들 自身の 運命을 決定지어 주기를 願한다면 美国은 즉시 南部베트남으로부터 自國의 軍隊와 衛星國의 軍隊를 철수시켜 同地의 人民에게 自身들의 일을 그들 自身이 解決짓지 않으면 안된다.

② 非武装地帶의 地位와 제네바協定 全体를 현저히 破壞하고 이 地帶의 地域을 集約적으로 폭격한 것은 美国이다.

③ 美国側은 北部베트남의 「限定爆發을 命한 존슨大統領의 善意에 대하여 종종 이야기하면서 베트남 民主共和國이 対応措置를 取할 것을 要求하였으나 이는 美国과 全世界의 世論에 의해 辛辣히 批判되었기 때문에 取하여진 것이다.

④ 美国은 獨立主權國家인 베트남民主共和國을 근거도 없이 공격하였는데 이는 公平한 世論과 國際法에 許容되지 않는다.

⑤ 南部베트남의 民間人은 美国, 傀儡軍과 사이공의 美司令官에 의해 학살되고 있다. 全世界는 美国이 南部베트남에서 犯罪를 쌓아 올리고 有毒藥品, 가스, 네이팜 등과 같은 國際法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대량擊滅兵器를 使用하고 있다. 美国은 베트남 民主共和國에 대한 戰爭을 에스칼레이트하였다. 美国은 이 戰爭을 데스

칼레이트 하여야 한다. 40)

以上과 같이 越盟은 对美協商에 있어서 歪曲, 誇張 및 欺騙戰術로 會談을 지연, 世界여론을 自己側에 有利하게 유도하는 등의 策略을 使用하였다.

마. 이슈의 操作

協商에 있어서 西方側의 弱点의 하나는 相對側으로 하여금 이슈를 決定토록 하는 것이다. 例컨대 1964年2月1日 존슨美大統領은 그의 記者會見에서 “南·北베트남을 中立化하기 위한 提案이 있었다면, 美國은 동정적으로 이를 考慮하겠다”는 程度로 言及하였다.

왜 北部베트남 中立提案을 마련치 못하고 主張도 못하였는가? 41) 共産主義者들은 이를 교묘히 利用한 것이다.

越盟과 NLF側은 協商에서 政治的 立場을 一貫해서 堅持하였다. 그들은 이미 擴大파리會談에서 強力하게 民族民主聯合政府樹立을 要求할 수 있는 事前作業을 다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民族民主革命」은 反仏獨立戰爭때 부터 베트남 勞動黨이 革命의 目的으로 규정해 놓았던 路線이다. 美國과 越盟은 停戰에 관한 問題를 交涉하고 있는 동안 民族解放戰線은 政治問題에서 主導權을 유지하려

註 40) 파리會談에서의 「헤리만」 美國代表, 「스안 투이」 越盟代表 發言 参照, 世界週報 1968年6月18日号 pp.36-44.

41) FRED C. IKLÉ, 前掲書, p.239.

는 態度가 역역히 보였다. 우선 巴里에서 68年 11月 中旬부터 平和內閣의 수립을 主張하기 시작하였다. 大衆的 水準에서는 12月 16日 NLF 創立 8周年을 맞이하는 中央委의 呼訴文形式으로 「티유-키-폰」政權의 打倒와 解放戰線과 協의하기 위한 平和內閣의 수립을 主張하였고, 여기에 步調를 맞추어 레 독 토 顧問도 파리에서 20日에 「現在の 政權이 平和政府에 의해서 바꾸어 지지 않는 限 베트남에서는 平和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越盟과 NLF 側은 오래전 부터 사이공에 대한 主導權장악을 위한 政治工作을 해 온 것이며, 파리會談이 進行될수록 점점 分明하게 나타난 것은 NLF 側이 ① 南部베트남에 있어서의 武装勢力 (越盟, 사이공政府軍, NLF) 의 문제는 베트남人끼리 해결한다는 条件 ② 臨時聯合政府는 美軍撤收의 日程을 決定함과 同時に 總選舉를 관장하는 일 ③ 總選舉의 結果로 正式 聯合政府가 수립된다는 条件 등을 고집한 것이다. 그러나 美國은 69年 5月 14日 닉슨大統領의 연설에서 ① 美-越盟 相互撤兵의 期間은 合意成立後 12個月間 ② 國際監視機關의 設置 ③ 國際監視下의 自由選舉라는 3가지 条件으로 具体화된 베트남 停戰政策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美國의 路線과 合致되는 7月 11日의 티우연설이 있었다.

이에 대해 NLF 側은 10項目的 제안에 뒤이어 6月 6~10日 사이에 人民代表大會를 열고 平和聯合을 포함한 南部베트남 共和國 臨時革命政府를 수립했다. 이에 따라 파리會談의 NLF代表도 臨時革命政府代表로 되고 首席에 班次席이 昇格했다. 이로서 파리會談

에서는 否定할 수 없는 政府樹立을 위한 하나의 主体가 形成된 것이다. 42)

이와 같은 政治的 이슈의 조작 및 주도권 장악과 더불어 越盟은 美国의 国内輿論을 惡用하였다.

즉 美国의 外交는 輿論에 고도로 민감한 것이 特徵이다. 反面에 共產主義者들의 協商者는 독재정부가 그들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西方側보다 어떤 利点을 가지고 있다. 특히 美国은 国民에게 国内討論을 시키지 않고서는 主要 이슈에 관한 協商態度를 發展시킬 수 없다. 소비에트 外交官은 西方側처럼 国内輿論에 抑压받고 있다고 느낄 必要가 없다. 共產主義國家에 있어서 국민은 協商에 관하여 거의 알고 있지 않으며 海外問題에 관한 영향력이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의 見解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그들 自身の 見解를 形成하려고도 않는다. 이러한 事實은 共產主義協商者들에게 보다 自由스럽게 協商戰術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들 協商者들은 統制된 宣傳機構를 통하여 長期的인 戰略과 短期的인 戰術을 支持할 수 있는 利点을 가진다.

종종 회담에서 이들은 西方政府의 立場을 반박하는 서방측 反對指導者, 科學者, 저널리스트의 성명을 즐겨 引用한다. 이들은 가장 교활한 戰略-계획의 비밀, 国内干涉으로 부터의 自由, 강력한 독재 政權의 支持-을 수행하는 데 必要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註 42) 黃性模, “越南協商”, 南北對話研究資料集, 中央情報部, 1970, pp. 96-97.

있다.⁴³⁾

이와 같이 越盟은 西方側協商의 弱点과 그들 선전기구를 통한 이슈의 조작, 美国內의 反戰여론 등을 惡用하여 協商에 있어서 美国으로부터 하나씩 둘씩 讓步를 얻어내는 데 成功하였다고 하겠다.

바. 秘密協商과 끝내기 要求作戰

協商에 있어서, 政府는 国内 利益集團이 그들의 協商에 관여하면 國家目的을 追求함에 있어 不利하다고 생각한다.

強硬立場의 편에 있는 市民은 相對側에 대한 양보를 批判할 것이다. 이러한 理由로 秘密外交는 즐겨 使用되었고 이 秘密協商은 주요한 두가지 效果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国内集團들로 하여금 協商過程을 전혀 모르도록 함으로써 흥정, 交渉기간中 壓力을 미치지 못하게 한다.

둘째, 第三者를 秘密속에 둠으로써 그들의 影響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⁴⁴⁾ 또한 끝내기 要求 (last minute demand) 는 未決 이슈들이 모두 解決되고 協定이 署名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提示된다. 만일 相對方이 合意된 協定을 마무리지으려 한다면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⁴⁵⁾ 이러한 끝내기 要求戰術을 全協商過程을 통하

註 43) FRED C. IKLÉ, 前掲書, pp.226-227

44) Ibid., p.134.

45) Ibid., p.221.

여 사용하였다.

즉 닉슨大統領은 歴史的인 中共訪問을 한달 앞둔 1972年1月25日 記者会見을 갖고 파리會談이 공전하던 1969年8月4日 以來 키신저 國務長官이 12回나 파리에 潛行 레 둑 토, 수안 투이 등 越盟側 協商代表團首腦와 秘密交渉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 秘密 協商은 71年5月 부터 本格化되었다. 5月31日의 첫회담에서 키신저는 美國側의 새 提案을 提示했고 6月24日의 두번째 會談에서는 레 둑 토가 9個項目의 越盟側 條件을 提示했다. 이 9個項目은 美國의 立場과 상당히 가까운 것이었다. 키신저는 즉석에서 9個項目이 秘密協商의 基礎가 된다고 이를 수락하였다. 키신저의 말을 빌면 越南平和의 輪廓이 어슴푸레하게 떠올랐던게 바로 이때였다고 한다.

서로의 立場이 비교적 좁혀지면서 키신저의 파리行은 빈도가 늘어났고 7月末에는 越盟의 9個項目 中에서 2個項目을 除外하고는 兩側의 立場이 接近하였다.

越盟의 9個項目은 大體로 71年内 美軍의 完全撤収, 티우政權에 대한 支持撤回, 民族和合 聯政樹立 등을 主要골자로 한 것이었다. 美國은 10月1日 ① 美國과 同盟軍은 合意後 6個月 以內에 全面撤収 ② 協定締結後 6個月 以內에 南部베트남에서 大統領選舉 ③ 選舉 1個月前에 正副統領 辭任 ④ 美國은 完全 中立을 지키고 選舉結果 및 其他의 政治過程의 結果를 지킨다. ⑤ 協定調印後에 인도차이나 全域에 대한 停戰을 실시한다는 등이었다.

그러나 越盟側은 原則的인 合意가 이루어지고 나서 부터 美軍의 完全撤収까지 時日이 너무 길다고 主張했다. 티우政府가 失脚된 後에, 보다 正確히 말해서 티우政府의 실각을 美國이 保障한 다음에 越南에서 美軍이 撤収하라는 것이 越盟의 속셈이라는 것을 키신저는 그제야 겨우 알아차릴 수 있었다.⁴⁶⁾ 美側提案에 따라서 越盟과 臨時革命政府代表는 그들의 7個項目提案을 補充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提案을 내 놓았다. 즉 ① 美國은 内部問題의 干涉을 中止하고 티우大統領은 즉시 사임하라 ② 사이공政權은 抑圧, 彈壓 機構를 해체하고 平定計劃을 中止, 政治犯을 석방하라 ③ 이 以後에 三派로서 構成되는 民族和解政府를 수립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美國 案에 대해서 越盟, 臨時革命政府代表들은 여기에 接近해 가면서도 美國이 받아들일 수 없는 政治提案을 해오고 그 것으로서 또 秘密會談이 계속되다가 美國이 새로운 양보를 하게 되면 그때 또 다시 美國側이 받아들일 수 없는 提案을 해오곤 하는 것이 파리會談이 시작한 후 부터의 特徵이었으며 72年은 그 絶頂의 해였다.⁴⁷⁾

1972年 닉슨이 秘密協商을 公表하게 된 것은 결국 協商카드를 가 놓은 채 2月の 中共訪問, 5月の 소련訪問을 통해 強大國의 영향력行使에 의해 美國의 입장을 관찰하려는 의도에서 였다고 하겠다. 越盟과 NLF側은 이에 대해 대대적인 일제 공격으로 응수

註 46) 鄭鍾旭, 前掲書, pp.231-232.

47) 黃性模, 前掲書, p.99.

와 政治形態를 다루도록 한 結果 ^① 臨時革命政府는 사이공政府側과
대등한 当事者로 베트남問題를 다룰 수 있게 되었고 ② 軍事的
側面에서는 北部베트남軍의 殘留로서 美國推算으로는 14萬5千名이
南部베트남에 그대로 버티고 있게 되었고 ③ 政治的 側面에서는
베트남의 主權問題는 그대로 남게 되어, 主權을 代表하는 正統性을
確保하기 위한 힘의 對決이 外勢의 干涉없는 가운데 어느때고
일어날 可能性만 남겨 놓았다. 하노이로서는 당초부터 美國을 굴
복시키기 위해 戰爭을 한 것이 아니고 베트남으로부터 물러나게
하려는 것이 하노이의 目標였던 만큼 하노이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자부하였다. 49)

註 49) Ibid., pp. 55. 60-61.

VI . 結 論

파리平和協定이 締結된지 2年後에 베트남共和國은 共產主義者들에게 敗亡을 당하였다.

이러한 越南의 共產化는 오랜 協商過程을 통해서 볼때 우리에게 주는 教訓은 매우 意義 있는 것이라 하겠다.

첫째, 越盟은 記述한 바와 같이 베트남의 共產化라는 基本目標를 가지고 一貫되게 協商에 臨하여 왔다. 이에 反하여 美國은 基本態度에 있어서 一貫性이 없었고 越南政府에 대한 美國의 見解나 態度에도 많은 問題가 있었다.

즉 美國은 越南軍의 能力과 越南政府에 대한 國民의 支持度를 過大評價하였었다. 또한 닉슨美大統領은 選舉公約으로 越南에서의 美軍撤収와 베트남戰爭의 베트남人에 의한 단행등 基本政策을 越盟과의 協商前에 미리 發表하는 등 협상과정에서 越盟에게 많은 양보를 하게 되었고 平和協定도 越南의 一部地域에서 일어나는 베트남의 공격행위를 中斷시키지 못하였다.

둘째, 國際法上 美國이 主張하여 오던 見解에 대한 양보를 協商過程에서 행한것이다.

즉 越南問題의 重要한 當事者인 越南을 계쳐놓고 越盟과 单独秘密協商을 展開한 것과 NLF를 協商의 테이블로 끌어 들인것 등은 우리의 各별한 주의를 必要로 하는 것이다.

셋째, 秘密協商에 의해 중요한 문제들이 마무리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越盟側은 原則的인 合意가 이루어지고 나서 부터 美軍의 完全撤収까지 時日이 너무 길다고 主張했다. 티우政府가 失脚된 後에, 보다 正確히 말해서 티우政府의 실각을 美國이 保障한 다음에 越南에서 美軍이 撤収하라는 것이 越盟의 속셈이라는 것을 키신저는 그제야 겨우 알아차릴 수 있었다.⁴⁶⁾ 美側提案에 따라서 越盟과 臨時革命政府代表는 그들의 7個項目提案을 補充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提案을 내 놓았다. 즉 ① 美國은 内部問題의 干涉을 中止하고 티우大統領은 즉시 사임하라 ② 사이공政權은 抑圧, 彈壓 機構를 해체하고 平定計劃을 中止, 政治犯을 석방하라 ③ 이 以後에 三派로서 構成되는 民族和解政府를 수립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美國 案에 대해서 越盟, 臨時革命政府代表들은 여기에 接近해 가면서도 美國이 받아들일 수 없는 政治提案을 해오고 그 것으로서 또 秘密會談이 계속되다가 美國이 새로운 양보를 하게 되면 그때 또 다시 美國側이 받아들일 수 없는 提案을 해오곤 하는 것이 파리會談이 시작한 후 부터의 特徵이었으며 72年은 그 絶頂의 해였다.⁴⁷⁾

1972年 닉슨이 秘密協商을 公表하게 된 것은 결국 協商카드를 내놓은 채 2月の 中共訪問, 5月の 소련訪問을 통해 強大國의 영향력行使에 의해 美國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의도에서 였다고 하겠다. 越盟과 NLF側은 이에 대해 대대적인 일제 공격으로 응수

註 46) 鄭鍾旭, 前揭書, pp.231-232.

47) 黃性模, 前揭書, p.99.

했다. 3月30日 최신형 蘇製 탱크, 미사일로 무장한 北部 베트남 正規軍이 비무장 地帶를 넘어 淸트리, 투아티엔省을 휩쓸고 라오스, 캄보디아의 國境地帶인 中部高原에도 第2戰線을 구축하고 다시 메콩三角洲와 사이공에 이르는 公路로 第3戰線을 뻗어왔다. 戰況은 美國이 장담하던 越南化政策이 虛構였음을 보여 주고도 남을 정도로 사이공側에 不利하게만 展開되었다.

美國은 4月6日 즉각 北部베트남에 대한 制限 大量爆撃과 第7艦隊의 포격再開로 응수한데 이어 5月8日에는 北部베트남 全海岸의 봉쇄, 해안선과 내륙河川에 대한 기뢰부설, B 52에 의한 사실상의 無制限 폭격으로 응수했다. 年末에는 하노이市가 처음으로 폭격을 받아 外國公館員까지 부상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그동안 닉슨은 6월에 소련을 움직여 하노이를 說得케 하고 中共을 통해 하노이의 真意와 입장을 듣고 美國의 立場을 설명하는 등 強大國外交를 벌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5월부터 키신저와 레득 토間的 秘密協商이 계속되면서 終戰마무리작업을 推進했다.

10月 키신저의 『平和가 지척에 와 있다』는 鎔言을 계기로 全世界는 終戰日을 매일매일 占ち다시며 들끓었다. 淸내 協商은 73年 1月 27日. 마침내 美國, 베트남共和國, 베트남民主共和國, 베트남共和國 臨時革命政府 등 4当事者が 베트남에서의 戰爭終結과 平和回復에 관한 協定과 4個의 議定에 調印함으로써 幕을 내렸다.⁴⁸⁾

註 48) 鄭鍾文, 越南協商事例에 관한 研究, 國土統一院, 1974, pp. 53-54.

3. 平和協定の 内容

「베트남에 있어서의 戰爭終結과 平和回復에 관한 協定」이라는 正式名称을 가진 베트남平和協定은 前文과 9章23条로 된 協定本文과 4個의 議定書가 附屬되어 있으며 주로 政治的内容과 軍事的 内容으로 構成되어 있다.

政治的 内容으로는 ① 南部베트남 人民의 自決權 ② 國際監視下의 總선거 ③ 三派로 構成되는 民族和解一致 全國評議會設立 ④ 平和的이고 段階的인 베트남의 再統一 ⑤ 軍事境界線의 性格 등이 규정되어 있고, 軍事的 内容으로는 ① 休戰方式 ② 外軍撤収 ③ 포로교환 ④ 休戰監視가 규정되어 있다.

休戰方式은 73年1月27日 24時를 기해 모든 南部의 兩當事者 間의 모든 部隊는 現狀 그대로의 位置에서 모든 武力行爲를 停止한다. 外軍撤収는 60日 以內에 軍隊, 軍事顧問, 技術軍事委員, 彈藥, 軍裝備, 戰爭物資까지 全面 撤収시키도록 되어있다. 포로交換은 外國軍撤収와 併行하여 60日 以內에 完了한다. 休戰監視는 休戰實施에 따른 諸般 軍事的 問題를 관장할 4當事者로 構成되는 四者 共同軍事委員會와 休戰實施, 平和維持를 管理하고 監視할 캐나다, 헝가리, 인도네시아, 폴란드 4個國 代表로 構成되는 國際管理監視委員會를 둔다는 등이었다.

結局 파리平和協定은 ① 統一을 平和的, 段階的으로 수행한다고 하고 그 대신 南部베트남에서 民族和解全國評議會를 構成해 總選舉

와 政治形態를 다루도록 한 結果 ^① 臨時革命政府는 사이공政府側과
대등한 当事者로 베트남問題를 다룰 수 있게 되었고 ② 軍事的
側面에서는 北部베트남軍의 殘留로서 美國推算으로는 14萬5千名이
南部베트남에 그대로 버티고 있게 되었고 ③ 政治的 側面에서는
베트남의 主權問題는 그대로 남게 되어, 主權을 代表하는 正統性을
確保하기 위한 힘의 對決이 外勢의 干涉없는 가운데 어느때고
일어날 可能性만 남겨 놓았다. 하노이로서는 당초부터 美國을 굴
복시키기 위해 戰爭을 한 것이 아니고 베트남으로부터 물려나게
하려는 것이 하노이의 目標였던 만큼 하노이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자부하였다. 49)

註 49) Ibid., pp. 55. 60-61.

VI. 結 論

파리平和協定이 締結된지 2年後에 베트남共和國은 共產主義者들에게 敗亡을 당하였다.

이러한 越南의 共產化는 오랜 協商過程을 통해서 볼때 우리에게 주는 教訓은 매우 意義 있는 것이라 하겠다.

첫째, 越盟은 記述한 바와 같이 베트남의 共產化라는 基本目標를 가지고 一貫되게 協商에 臨하여 왔다. 이에 反하여 美國은 基本態度에 있어서 一貫性이 없었고 越南政府에 대한 美國의 見解나 態度에도 많은 問題가 있었다.

즉 美國은 越南軍의 能力과 越南政府에 대한 國民의 支持度를 過大評價하였었다. 또한 닉슨美大統領은 選舉公約으로 越南에서의 美軍撤収와 베트남戰爭의 베트남人에 의한 단행등 基本政策을 越盟과의 協商前에 미리 發表하는 등 협상과정에서 越盟에게 많은 양보를 하게 되었고 平和協定도 越南의 一部地域에서 일어나는 베트콩의 공격행위를 中斷시키지 못하였다.

둘째, 國際法上 美國이 主張하여 오던 見解에 대한 양보를 協商過程에서 행한것이다.

즉 越南問題의 重要한 当事者인 越南을 계쳐놓고 越盟과 单独秘密協商을 展開한 것과 NLF를 協商의 테이블로 끌어 들인것 등은 우리의 各별한 주의를 必要로 하는 것이다.

셋째, 秘密協商에 의해 重要한 문제들이 마무리 지어졌기 때문에

티우政府는 協商過程에서 意思表示를 할 機會가 없었고, 다만 秘密會談에서 合意된 事實을 수락토록 強要當했다는 것이다. 즉 美國이 國內與論에 몰려 처음에 내세웠던 條件들을 점차 緩和해 갔으며, 이러한 過程에서 美國政府와 越南政府사이에는 充分한 協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궁극적으로 越南의 의사가 거의 무시당한채 키신저와 레득토가 비밀협상으로 문제를 매듭지었다. 마지막 段階에서 越盟側과 休戰의 條件들에 合意한 키신저는 그러한 條件들이 越南政府에 가장 이로운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合意文을 가지고 티우大統領에 갔을때 티우가 合意文에 이의를 提起, 키신저는 크게 화를 냈다는 것이다. 結局 티우는 美國의 壓力에 굴복, 合意文에 서명하고 말았다.

네째, 越盟은 協商을 하나의 手段으로 活用하였다. 즉 公誦席上에서는 讓步의 가능성을 비침으로써 一般의 기대를 부풀게 해놓고 秘密會談에서는 강경한 態度를 보임으로써 美國의 立場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였다.

또한 協商을 북쪽中止의 미끼로도 使用하였다.

다섯째, 越盟은 美國의 與論을 惡用하였다.

즉 美國政府와 美國國民들 사이에 틈을 갈라 놓는 手法을 使用하였다. 美國의 反戰與論을 利用하여 美國의 여론에 직접 呼訴하는 方法을 使用하였다는 것이다. 胡志明이 反戰데모대에 직접 편지를 보냈으며, 종종 世界日刊紙와의 인터뷰도 함으로써 美國政府의 입장을 거북하게 만들었다.

여섯째, 베트남과 越盟軍은 越南社会의 不安과 無秩序의 造成에 주력하여 国民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越南政權의 不正·腐敗에 항거하는데 各界各層의 人士들을 유도하였다는 것이다.

일곱째, 파리平和協定은 티우政權의 越盟軍과 美軍의 同時 撤兵主張을 무시하고 15萬名의 越盟軍을 南部베트남에 잔류시킨채 美軍만 撤收함으로써 越盟軍의 대공격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는 것이다.

여덟째, 파리협정은 베트남의 真正한 平和를 目的으로 한 것 보다는 國內外로 몰린 美國이 지칠대로 지쳐 協商을 빨리 마무리 지우려 하고 있었고 越南에서 명예롭게 빠져나가기 위하여 체결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南北對話를 進行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共產主義者들의 協商戰略과 이들과의 協商結果가 무엇을 招來하였는가에 대한 이해와 주의를 경주할 것이 더한층 必要하다고 하겠다.

